

9월호



국세

National Tax Service Magazine
www.nts.go.kr

2020 SEPTEMBER
vol. 643

이달의 표지 시흥세무서

‘날씨 선선했으면 책 좀 읽어야지’ 하고 결심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지체 없이 책을 들어야 할 때,
시흥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책의 맛에 흠뻑 빠져보세요.

CONTENTS

월간「국세」 2020년 9월호

통권 제643호

발행인 국세청장 김대지

발행처 국세청 세정홍보과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전화 044) 204-3184

발행일 2020년 9월 4일

제작처 문화공간

월간「국세」는 국세청의 정책 소식을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국세 관련 종합정보지입니다.

* 여기에 실린 외부 작가의 원고 내용은 발행인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지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소식 -
월간「국세」 코너에서 전자책자와 pdf 파일을
제공합니다.



TAX

세금으로 보는 세상



18

- 02 #택스태그
신성장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세법을 확인하세요!
- 04 택스 포커스
세금포인트 전용
온라인쇼핑몰 오픈
- 10 국세通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누가, 왜 할까?
- 14 세금 생활백서
함께 버텨낼 든든한 힘!
위기의 사업자 조세지원 제도
- 18 문화로 稅상읽기
미국 소득세제를 중심으로 본
현대적 의미의 소득세 역사
- 22 텍스트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거야

LAW

세법에서 찾은 가치



40

- 24 국세법무자료
법원판례 | 국세심판결정사례 |
국세심사결정사례 | 질의회신
- 32 조세판례평석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즉시 감자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④
- 40 세법 확대경 1
조세의 헌법적 규제 ②
- 48 세법 확대경 2
세법상 서류의 공시송달

LIFE

세상에서 얻는 행복



54

- 54 반갑습니다
시흥세무서
- 60 인문학산책
삶을 빛나고 풍성하게 하는
독서의 힘
- 64 재테크 심리코드
100세 시대의 재테크
개인 브랜드화 전략
- 66 소통N공감
비대면 시대의 신뢰 형성법
마음의 문간에 들어서기
- 68 내 몸 다스리기
먼저 먹으면
살이 되는 음식, 독이 되는 음식
- 70 NTS 뉴스룸
- 77 9월 세무 캘린더
- 79 국세 갤러리
- 80 국세 권말고사

신성장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세법을 확인하세요!

#태크태그로 알아보는 세금 제도

대상 확대

#신성장 · 원천 기술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신성장 · 원천 기술 R&D 비용 세액 공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였다. 11대 분야 173개 기술(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융복합 소재 관련 기술 등)의 신성장 · 원천 기술 대상을 12대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하였다. 30개 기술이 신설되고, 14개 기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시스템반도체 설계 · 제조 기술,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기술, 운전자 생체데이터 분석 기술, 6G 기술 등이 신성장 · 원천기술 대상이다. 첨단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20개 기술도 신설하였다.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분말 제조 기술, 고압 컨트롤 밸브 제조 기술, 첨단 머시닝센터 제조 기술 등이다. 2020년 2월 1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신성장 R&D 위탁기관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위탁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상을 확대하였다.

- ① 임상1·2·3상 시험에 한하여 국외 위탁이 가능한 기관은 종전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 등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세분화' ① 기업의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②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 등 또는 국외 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하고, 종전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으로 명확히 하였다.
- ② 모든 신성장 R&D에 대해 국외 위탁이 가능한 기관은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하거나 8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 법인(부설된 연구기관 포함)이 대상에 새로이 추가되었다. 간접소유비율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2020년 3월 13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황

#생산성향상시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황*하고 적용대상 범위도 더욱 명확히 하고 확대하였다. 종전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생산·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클라우드 서비스, 공장원격관리시스템 등)을 포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물류 자동화설비 등 첨단물류시설 추가)'으로 개정하여 대상을 명확화 및 추가하였다. 대상 확대는 2020년 2월 1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그 외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에 대해 적용한다.

*공제율 한시 상황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	3%	7%



기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① 2020년 투자분	2%	5%	10%
② 2021년 투자분	1%	5%	10%
③ '②' 이후	1%	3%	7%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102개였던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등 관련 시설 39개를 추가해 141개로 확대하였다. 2020년 3월 13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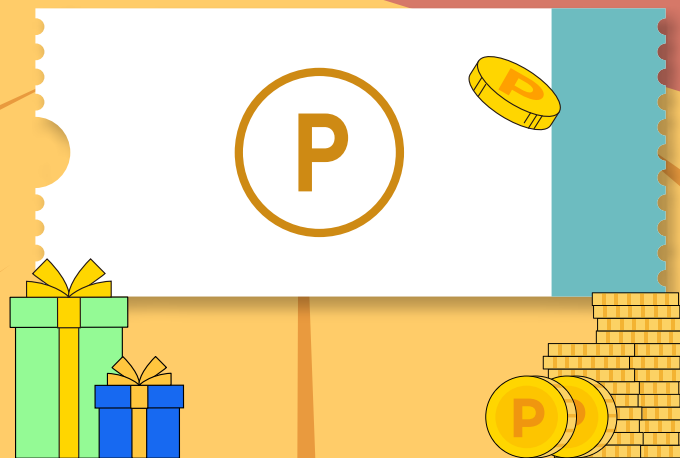
#초연결 네트워크

5G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공제대상에 5G 기술이 적용된 기지국 장비 매입가격에 공사비 등 부대비용도 포함(다른 투자세액공제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금액 계산)하였다. 적용 범위와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세금포인트 전용 온라인쇼핑몰 오픈

잠자는 세금포인트로 살림 장만하기

성실납세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납부액에 대해 일정한 포인트(10만 원당 1p)를 부여해온 국세청이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할인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몰'을 지난 8월 26일 오픈했다. 각종 생활 가구·가전·주방·식품 등을 세금포인트로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찬스이다. 어떤 제품을 얼마나, 어떻게 할인받을 수 있을까, 조목조목 함께 들여다보자.



‘세금포인트몰’에서는 어떤 물건을 얼마나 싸게 사나요?

이번에 오픈한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이하 ‘세금포인트몰’)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의 업무협력으로 구축됐다. 즉 우수 중소기업의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가득하다. 소비자는 4만여 개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일거양득이다.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3,300만여 명의 개인 납세자들은 세금포인트몰에서 제품 구매 시 자신이 모은 세금포인트로 할인받을 수 있는데 구매금액 10만 원마다 세금포인트 1p로 구매금액의 5%를 할인받는다. 세금포인트몰은 아직 개인납세자만 이용 가능하지만, 올해 9월 중에 법인 납세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예정이다.

〈세금포인트 제도 및 현황〉

(단위: 만 명, 백만 점)

대 상	부여 세목	부여 시점	부여 점수	부여 현황(2019년 말)	
				대상	포인트
개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등	2000. 1. 1. 이후 신고 · 자진납부세액	10만 원당 1p (고지납부 0.3p)	3,309	5,900
법인 (중소기업*만 해당)	▶ 법인세 등	2012. 1. 1. 이후 신고 · 자진납부세액	10만 원당 1p (고지납부 제외)	62	558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나 에 게 도 세 금 포 인 트 가 있 을 까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로그인한 후 [세금포인트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앱)

▶ 경로: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② 세무서 민원실 방문 조회



세금포인트몰 알짜 활용

세금 포인트몰 이렇게 활용하자!

세금포인트몰은 세금포인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설된 만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한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확인하고,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 메뉴를 통해 세금포인트몰에 접속하자.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입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 사이트로 이동된다. 쇼핑몰 사이트에서 구매 제품을 선택 후 결제단계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과는 별도로 세금포인트몰의 회원가입도 필요하다. 회원가입은 최초로 접속하는 1회에 한하며, 이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입장하면 자동으로 로그인된다.

세금포인트를 통한 할인은 개별상품마다 할인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품목 전체에 적용되므로 최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매할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단계에서 보유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금액의 5%를 할인받게 되고, 사용한 포인트만큼 나의 누적 세금포인트에서 차감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몰' 입장하기



세금포인트몰 초기화면



'세금포인트몰' 장바구니 화면



결제단계에서 세금포인트 적용 후

추가 포인트로 계속 할인, 할인, 할인!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할인에 구매금액의 한계는 없다. 구매금액이 증가해도 세금포인트만 있다면 5% 할인 혜택은 계속 제공된다. 기본 할인방식은 구매금액 10만 원 이하에 대해 세금포인트 1p를 사용할 경우 구매금액의 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구매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금포인트를 추가 사용하여 구매금액의 5% 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즉 구매금액이 10만 원인 경우 세금포인트 1p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에서 5,000원을 할인받는다. 구매금액이 15만 원이라면 2p의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7,500원을 할인받는다. 구매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세금포인트 5p를 사용하여 5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 구매금액별 사용포인트 및 할인율〉

구매금액	10만 원 이하	10~20만 원	20~30만 원	30~40만 원	40만 원 초과
사용포인트	1p	2p	3p	4p	5p
할인율	5%	5%	5%	5%	5%

세금포인트몰 Open Event

세금포인트몰 개통 당일인 8월 26일(수)부터 오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구매 후기를 남긴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0명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제공한다.

기간: 8/26(수)~10/4(일) 약 한 달간

대상: 이벤트 기간 중 5만 원 이상 구매고객은 경품행사에 자동 응모됨

상품: - 안마의자 등 다양한 경품(추첨을 통한 총 16명의 당첨자)

- 커피 교환권(구매 후기를 남긴 고객 중 추첨을 통한 1,000명)

당첨자 발표: 10/6(화) 홈페이지 게재



세금포인트 활용 고수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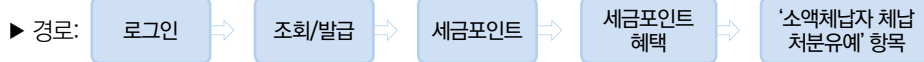
세금포인트로 체납처분유예가 가능하다? Yes or No

정답은 'Yes'이다.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1,0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체납처분유예(매각유예에 한정)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예신청 대상금액은 '적립 세금포인트×10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하며, 최대 100포인트를 한도로 한다.

체납처분유예를 받고자 하면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에서 사용 가능한 세금포인트를 확인한 후 화면의 '소액체납자 체납처분유예' 항목에서 체납처분유예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체납처분유예 신청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앱)



② 체납처분유예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③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국세공무원도 듣는 세법 강의, 세금포인트로 수강 가능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내 '납세자 세법교실'에 우선수강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납세자는 세금포인트(3p)를 사용하여 '납세자 세법교실'에 우선 수강할 수 있고, 우선수강권을 부여받으면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항목에 위치한 '교육원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홈페이지 내 '납세자세법교실' 수강신청 화면에서 우선수강권을 사용하면 된다.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수강 신청(3단계)

세금포인트로 공항에서 우아하게, 여유롭게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설치된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는 모범납세자에게 우대혜택으로 제공되는 사무·휴식공간으로 세무상담 및 증명발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휴대폰 통·번역기 무료대여 및 휴대폰 충전기가 비치되어 있어 편리하다.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역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이용 가능하다. 5p의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며 동반자를 포함해 이용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방법은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에서 사용 가능한 세금포인트를 확인한 후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의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항목에서 '위치보기'를 이용하여 비즈니스센터 위치를 확인하고, 직접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한 뒤 안내데스크에서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존 혜택은 유지되며 활용도 더욱 풍성하게

세금포인트를 활용하여 새롭게 제공되는 혜택 이외에도 납세유예 신청을 할 때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는 기존 혜택은 계속 제공된다. 납세자는 적립된 '세금포인트×10만 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연간 5억 원 한도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다.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과 관련해 개선된 내용도 있는데, 종전에는 세금포인트의 사용기준이 개인과 법인이 달라 유예 신청 세액이 개인의 경우 10만 원 이상(보유포인트 1p 기준), 법인의 경우 1,000만 원 이상(보유포인트 100p 기준)인 경우에만 세금포인트를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담보 제공 부담 완화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도 개인과 동일하게 유예 신청 세액이 10만 원 이상(보유포인트 1p 기준)이면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금포인트몰 오픈과 더불어 성실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금포인트에 대한 새로운 우대혜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9월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시기이다.
합산배제 신고를 놓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이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부터 합산배제 대상, 세액계산 방식 등에 대해 안내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누가, 왜 할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세액계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아래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되는 세금이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 잡종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즉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1차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해당 부동산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세무서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인별로 전국에 소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90%(2020년 기준)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 2019년 이후

주택(일반)		주택(조정2, 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이하	0.6%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6억 원 이하	0.9%				
12억 원 이하	1%	12억 원 이하	1.3%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4%	50억 원 이하	1.8%				
94억 원 이하	2%	94억 원 이하	2.5%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2.7%	94억 원 초과	3.2%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임대주택 등 일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합산배제하여 과세하지 않으며, 이런 합산배제에 해당할 경우 별도로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 올해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하고 이후 변동이 없을 경우는 신고 없이 기존대로 합산배제되고, 변동 내역이 있을 경우 변동분에 대해서만 신고한다.

올해 합산배제 신고 기간은 추석 연휴로 9월 16일(수)부터 10월 5일(월)까지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다.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 주택 및 토지는 아래와 같다.

① 합산배제 임대주택

지자체 임대사업등록 및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개시를 하고 있는 아래의 임대주택에 해당된다.

임대주택 유형	전용 면적	주택 가격	주택 수	임대 기간
매입 임대 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전국 1호 이상	5년 이상 ³⁾ 8년 이상
건설 임대 ²⁾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49㎡ 이하	6억 원 이하	전국 2호 이상	5년 이상 ³⁾ 8년 이상
기존 임대 ⁴⁾	국민주택 규모 ⁵⁾ 이하	3억 원 이하	전국 2호 이상	5년 이상
미임대 건설임대(민간)	149㎡ 이하	6억 원 이하	-	-
리츠·펀드 매입 임대	149㎡ 이하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10년 이상
미분양 매입 임대	149㎡ 이하	3억 원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5년 이상

1)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

2) 직접 건설하여 취득한 주택

3) 2018. 3. 31.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2018. 2. 13. 개정)

4) 2005. 1. 5.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5) 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② 기타 합산배제 사유용 주택 등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
- 학생 또는 종업원 공동취사용 기숙사 주택
- 주택건설업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과세기준일까지 자치단체장 인가 및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 시공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
-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주택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일정한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일정한 미분양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 향교 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
-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 판매 후 리스) 등이 매입하는 주택

공감하는 조세행정

함께 버텨낼 든든한 힘! 위기의 사업자 조세지원 제도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
이럴 때 사업자들의 조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법과 제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보자.



위기의 사업자 지원제도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납부기한 연장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기한연장 신청:**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한연장 기간:**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한정)

〈납부기한 연장 사유〉

-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②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⑥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⑦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 ⑨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 포함)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⑩ '②', '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준다.

- **징수유예 신청:** '징수유예 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징수유예 기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유예한 날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한정)

〈징수유예 사유〉

-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⑥ 위의 ①~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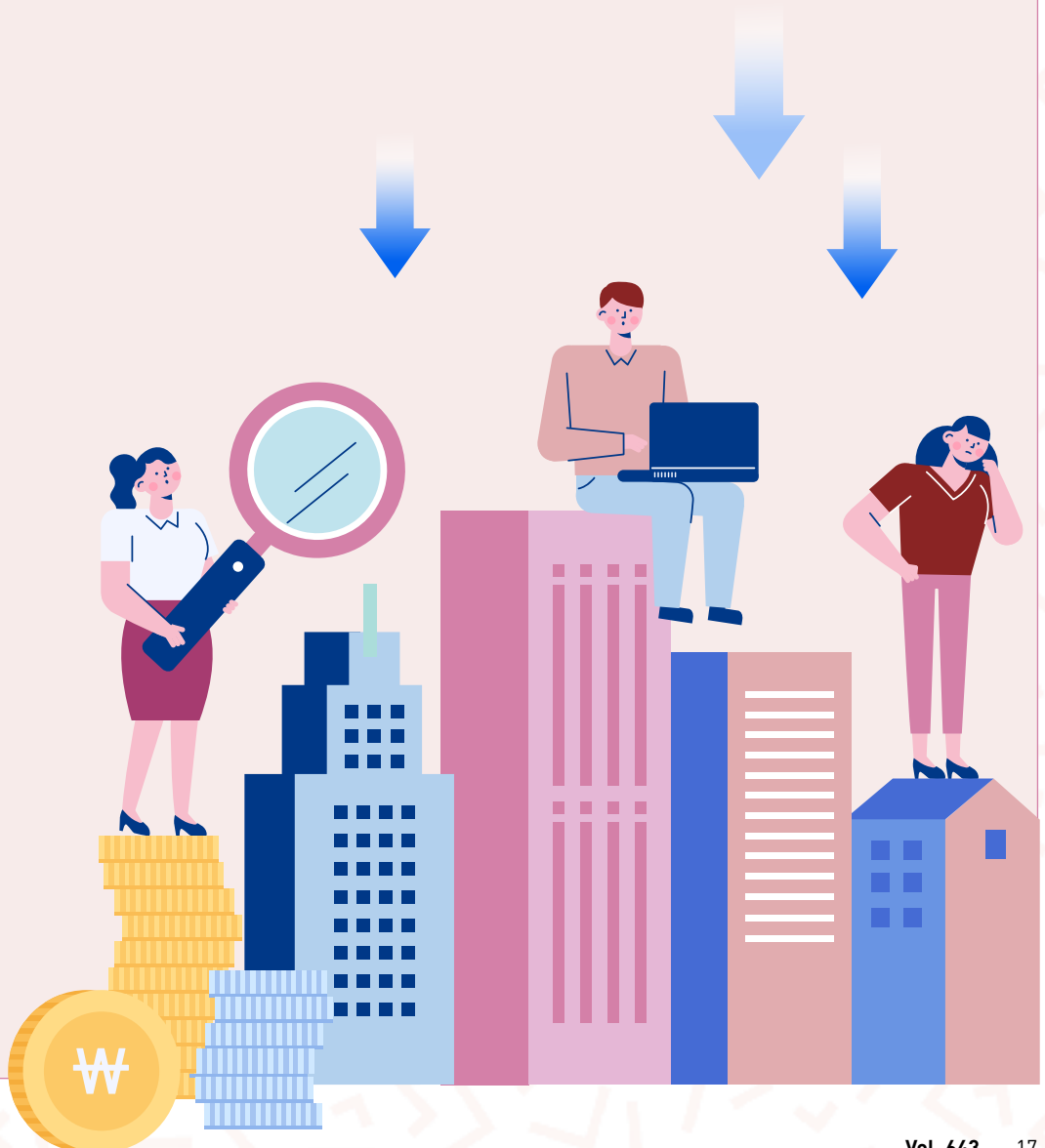
- **채납처분의 금지:**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한 채납처분(압류 및 공매 등) 중단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 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사업(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 직전 3년 평균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을 모두 폐업
- ② 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 개업 후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 ③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합계 체납액(가산금 제외) 5,000만 원 이하
 - 특례 내용: 가산금 면제 및 체납국세 분할납부(최대 5년) 허용
 - 신청 기간: 2020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역사적으로 볼 때 토지 수확물이나 상인들의 판매 등 소득과 유사한 대상에 대한 과세는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현대적 의미의 소득세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도입되었다. 미국 소득세제의 도입 배경과 발전과정을 통해 현대적 소득세제의 발전사를 살펴본다.

미국 소득세제를 중심으로 본 현대적 의미의 소득세 역사



미국 소득세제 도입의 배경

독립전쟁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미국은 관세와 재산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체계를 유지하였다. 높은 관세는 세수 이외에도 유치단에 있는 산업을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 아래 재산에 대한 과세는 일찍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고, 건국 초기에는 연방재산세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개개인이 보유한 재산의 전체적 크기가 부담능력을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재산을 동일하게 과세하는 일반재산세도 주에 따라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중심의 정책은 상품 가격을 높임으로써 농민 등 서민들에 부담을 초래하는 반면, 산업자본가들에게는 크게 유리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또한 높은 관세는 남부와 북부 간의 지역갈등을 유발하였다. 즉 영국 등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양모, 직물, 농산품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북부 지역의 산업 이익을 보호하였지만, 남부의 경우 면화 등 수출을 위해서는 낮은 관세가 상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재산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재산의 크기를 바탕으로 부담능력을 반영하기는 어려웠고, 특히 경제가 산업화되면서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Tip

전쟁의 위기상황에서 도입된 소득세

새로운 세금이 신설되고 세율이 인상되는 많은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상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가 도입된 계기 역시 전쟁이라는 위기상황이었다. 전쟁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필요했고, 이를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1793년 영국은 프랑스 혁명정부와의 전쟁에 돌입하였고 증가하는 전비조달을 위해서 간접세 인상이나 상속세 도입 등 여러 수단이 동원되었다. 이와 함께 1799년 일정 수준 이상의 모든 소득에 대해 최고 10%의 누진세율을 부과하는 근대적 의미의 소득세가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소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가 많이 침해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탈세가 만연하는 등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나폴레옹을 물리치기 위한 세금(The Tax to beat Napoleon)'이라는 슬로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영국을 위협하는 나폴레옹과의 전쟁에 승리해야 한다는 애국심에 호소함으로써 보다 쉽게 수용되었다. 1802년 평화조약이 체결된 이후 폐지되었지만 1803년에 재도입되었고, 워털루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816년 폐지되었으며, 과세기록도 소각되었다. 이후 늘어나는 예산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1842년에 소득세가 다시 도입되었는데 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지속되었지만, 1860년대까지는 누진세율 체계의 소득세가 세제의 기본요소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전쟁 시 자원조달을 위해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남북전쟁 전비조달을 위해 1862년, 링컨 대통령은 최초의 연방소득세를 3~5% 세율로 과세하였으며, 이는 전쟁 이후 1872년 폐지되었다. 이처럼 소득세는 비록 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되고 수용된 것이었지만,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전, 독점이나 소득집중의 폐해 등 제반 사회경제적 현상은 정부의 사회·정책적 기능 확대와 함께 소득재분배를 위한 소득세제의 출현을 이미 준비하고 있던 것이었다.

한편 미국 등과는 다르게 프랑스의 경우 소비세를 중심으로 세제가 발전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산업화 속도가 느렸고 농민이나 소상공인, 소기업 등이 강하게 유지되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을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높은 관세를 찬성한 것이다. 또한 아직 연방정부가 강력한 집권적 힘을 가지지 못했던 미국에 비해 중앙집권 국가였던 프랑스는 소득파악이나 징세 등의 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재정침탈의 우려가 강했고, 따라서 소득세보다는 조세저항이 적은 소비세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소득세제 도입과 위헌소송

1892년 선거에서 대통령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관세 인하를 우선과제로 설정하였다. 1894년 클리블랜드 대통령과 민주당은 관세법(Tariff Act of 1894) 개정을 통해서 관세율을 인하하고 그로 인해 부족한 세수는 소득과 법인의 이윤, 증여 및 상속 등에 대한 과세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의 세율을 과세하고 기업이윤과 증여 그리고 상속에 대해서도 2%를 과세하는 것을 포함하였는데 이를 통해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유층의 세 부담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세 과세에 대해서는 위헌소송이 제기되었다. 건국 당시 연방재산세 도입이 검토되었으나 남부 대지주들의 반대로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고, 대신 재산에 대한 세금 등 직접세는 인구비례로 주 간에 할당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규정되었던 것이다. 농민대부 및 신탁회사(Farmers' Loan & Trust Company)가 주주들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자 이 조항을 근거로 폴록(Pollock)이라는 소액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1895년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Pollock v. Farmers' Loan & Trust Co.)에 대해 '농지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직접세인 것처럼 부동산과 관련한 이자, 배당, 임대료 등에 대한 세금도 직접세이며, 따라서 직접세는 인구비례로 주 간에 할당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당시의 상황은 제2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거대한 독점기업이 등장함에 따라 소수의 기업인에게 부가 집중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판결의 소수의견도 '이러한 판결은 부자들에게 대해 국가의 과세권이 굴복한 것이며, 사회주의라는 망령을 덧씌워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하고자 하는 의회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진보의 시대에 소득세 도입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등에 의해서 다시 주창되기 시작하였는데, 위헌판결을 피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였다. 결국 1909년 제16차 헌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의회를 통과하고 이후 1913년까지 주 3/4의 동의를 받아 확정되었다. 이 수정



헌법의 내용은 의회는 어떠한 원천에서 발생하
것이라도 소득에 대해서 주 간에 할당하지 않고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헌법개정에
따라 1913년의 세입법은 개인 순소득에 1~7%의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미국 소득세제의 발전

도입 당시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최상층의 일부
소득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과세로
운영되었다.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세수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소득세
최고세율은 1916년의 세입법과 1917년의 전쟁세
입법을 통해 각각 15%와 67%로, 1918년에는 77%
까지 급속도로 인상되었다. 전쟁 이후 1921년부터
세율은 점차 인하되기 시작하여 1928년 24%까지
하락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1921년 소득세
징수액은 GDP의 4.7%에 이르렀는데 이후 하락
하여 1920년대와 1930년대의 경우 약 2% 수준에
서 유지되었다.

66

타임지는 관련 기사에서 1942년의
세입법을 ‘시민들부터 돈을 징수하기 위해
고안된 가장 큰 장치’라고 하였는데, 납세자
수를 약 2,600만 명에서 4,00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최고세율은 1944년
94%까지 인상되었다.

99

제2차 세계대전은 소득세가 대중과세로 전환한
계기가 되었다. 1942년 일본의 진주만 기습 이
후 나라 전체가 전쟁 수행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소득세의 세율
인상과 함께 과세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타임
지는 관련 기사에서 1942년의 세입법을 ‘시민들
부터 돈을 징수하기 위해 고안된 가장 큰 장치’
라고 하였는데, 납세자 수를 약 2,600만 명에서
4,00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최고세율은
1944년 94%까지 인상되었다. 그에 따라 소득
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1944년 15.7%로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유럽과 미국 전반적으로 소득세의 세수 비
중은 종전 이후 11~12%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과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
운 세목이 도입되거나 과세가 대폭 강화되더라
도 종전 이후에는 상당 부분 완화되었던 것에
비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그
과세체계가 유지되었다. 이는 유럽의 재건을 위
한 마셜플랜 등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었고, 사
회보장과 복지의 확대, 냉전 등으로 정부재정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나택수씨네 오늘은 무슨일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거야





법원판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그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판결요지

2002. 9. 2.

원고

특수관계인 BB와 신기술
공정 기술사용계약 체결
(12년 동안 기술사용료
지급)

2003. 9. ~

BB

신기술 공정 적용 제품생산
기술사용료 미지급

2014. 12. 1.

처분청

원고가 기술사용료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법인세 등 부과처분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고, 주식회사 AA(이하 'AA')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1990. 3. 경 XX에 BB(이하 'BB')를 설립하였음.

나. BB는 종래 ○○ 공법(이하 '구기술 공정')을 이용하여 △△을 생산하다가 2002. 9. 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개발한 ◇◇ 공법(이하 '신기술 공정')에 관한 기술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BB에게 신기술 공정과 관련 특허를 사용·수정·개선할 수 있는 기술응용권을 허락하고, BB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12년 동안 원고에게 매년 미화 30만 달러의 고정기술료(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해에는 미화 40만 달러)와 매년 각 분기 매출액의 2%에 상당하는 런닝로열티 등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함.

다. BB는 2002. 9. 2. 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화 40만 달러의 고정기술료를 지급하고 2003. 9. 23. 경부터 신기술 공정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고정기술료와 런닝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음.

라. 피고는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고정기술료와 런닝로열티(이하 '이 사건 기술사용료')를 국외특수관계인인 BB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것을 이 사건 기술사용료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의 포기로 보아 2014. 12. 1.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를 적용하여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와 2011, 2012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기술 공정이 이 사건 계약 시 원고가 BB에게 제공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성능을 발현하는 경우에만 BB의 원고에 대한 기술사용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BB에 대한 기술사용료 채권과 B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음.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조건부 법률행위,

상계의 요건, 묵시적 합의해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음(대법원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두64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기술 공정의 기술적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손해배상채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다툼은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 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툼은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음.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손금으로 산입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4.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임.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참조).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 개별적·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정하고, 제9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 유형을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그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나.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

- 1 BB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신기술 공정을 적용하여 2013. 1.경까지 △△를 계속 생산하였고, 신기술 공정이 BB의 △△ 생산량과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구기술 공정의 수 배에 이르렀음.
- 2 원고는 2003년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술사용료를 한 번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2002. 9. 2.경 BB로부터 미화 40만 달러의 고정기술료를 받은 이후 BB에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지도 않았음.
- 3 2007년 이후에는 신기술 공정의 기술적 문제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 BB는 신기술 공정의 기술적 문제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번도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지 않았음.
- 4 이 사건 기술사용료는 매년 미화 30만 달러의 고정기술료와 매년 각 분기 매출액의 2%에 상당하는 런닝로열티로 구성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기술사용료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
- 5 AA는 2013. 8.경 원고로부터 신기술 공정 관련 기술을 양수하기 위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였는데, 신기술 공정 관련 기술은 원천기술 개발 이후 많은 수율 향상과 원가 절감을 가져와 전체적으로 기술완성도가 높고, 경쟁 기술에 비하여 6배 이상의 경제성을 가지며, 국내외에서 특허등록을 마쳐 권리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되었음. 그 후 원고는 2013. 10. 16. AA에 신기술 공정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원에 양도하였음.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에 이 사건 채권을 포기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의 채권 포기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대법원2018두56459, 2020. 3. 26.

국세심판 결정사례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판결요지

2001. 4. 24.

청구인들
쟁점토지(답) 취득

2005. 10.

청구인들
쟁점토지 형질 변경(대지),
쟁점건물 신축

2015. 7. 30.

청구인들
쟁점부동산 양도
→ 쟁점토지, 쟁점건물
구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구분매매계약서 첨부)

2019. 4. 25.

처분청
쟁점부동산 일괄양도가액을
임의구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
→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2019. 12. 19.

청구인들
심판청구 제기

가. 청구인 AAA와 그 배우자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들')는 2001. 4. 24.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 답 〇〇㎡(이하 '쟁점토지')를 공동(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하고, 이를 2005년 10월에 대지로 형질변경하고 그 지상에 경량철골조 단층 건물 △△㎡(무허가 건물 △△㎡도 존재함이 확인되었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를 신축하였음.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2015. 7. 30. CCC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2015. 9.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작성한 각각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구분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원(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XX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YY원)으로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〇〇원을 각 신고·납부하였음.

다. 처분청은 〇〇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일괄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각 자산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9. 4. 25. 청구인들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〇〇원을 각 결정·고지하였음.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7.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2.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하여 각각 양수인들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쟁점구분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각 자산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그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건물의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각 자산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

- (2) 청구인들은 청구인들과 양수인 CCC와 1인 간의 쟁점건물과 쟁점토지에 대한 2015. 6. 12.자 각각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각각 첨부되어 있음.
- (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은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의 주요 부분을 보면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3. 위 매매가액은 건물을 포함하여 건물을 짓기 위한 약 3미터 옹벽설치와 성토 토목공사, 형질 변경비용, 상수도(맞은편 도로에서 끌어왔음)공사 정원수 식재 등에 투자된 제반비용 포함한 금액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은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로 작성된 특약사항의 주요 부분을 보면 “1. 건물은 계약일 현재 상태대로 인도하되 건물의 물리적 하자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수리하여 사용한다(수도, 전기 등 부속시설물도 위와 같다). 6. 매매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원에 월세 ㉣㉣원 있음. 단, 대지부동산은 매도인 명의로 명도서류를 발송하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매도인은 잔금지불 이후에도 서류상 적극 협조한다(대지 부동산 인도 여부와 상관없이 잔금지불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들이 2015. 6. 1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건물은 ㉤㉤원, 쟁점토지는 ㉥㉥원에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상에도 각 자산별 거래가액이 위와 같이 신고되어 있음.
- (4) 청구인들은 청구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의 쟁점부동산 양수인 CCC와 공인중개사의 진술서(작성시기: 2019년 3월)를 제출하였음.
- (5)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이 2018년에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던 2015. 6. 12.자 쟁점일괄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함께 총 매매대금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 (6) 처분청이 ㉧㉧시 ㉨㉨구청장에게 요청한 건축물 존재 사실 여부 확인에 대한 2019. 4. 12.자 회신문을 보면, 쟁점건물 중 무단증축한 총면적은 ㉩㉩㎡이고, 그 구조는 조립식판넬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7)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쟁점비교토지가 촬영된 다수의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제출하였음.
- (8)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당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제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m², 원/m²)

구분	면적	청구인들 신고	처분청 결정
쟁점토지	○○	XXX,XXX	XXX,XXX
쟁점건물	△△	X,XXX,XXX	XXX,XXX

- (9) 2015. 12. 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0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 해설을 보면 일괄양도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을 보완하고,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안분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신설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적용 시기는 2016.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구분매매계약서상의 각 자산별 양도가액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사실상 CCC 외 1인과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총 ◇◇원에 일괄양수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일괄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은 노후한 경량철골조 건물이고, 양도당시에 전체 점포 7칸 중 5칸이 공실이었으며, 그 총면적도 △△m²(약 △△평)에 불과한데 쟁점구분매매계약서상 그 양도가액을 ◎◎원으로 기재한 반면, 도로에 접하여 있고, 토목공사 등을 하여 대지로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으며, 그 면적이 ○○m²(약 ○○평)에 달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쟁점구분매매계약서에 기재한 점, 이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m²당 양도가액이 xxx,xxx원에 불과한데 쟁점건물의 m²당 양도가액이 x,xxx,xxx원에 달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합리적인 가액의 구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이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각 자산별 양도차익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232, 2020. 7. 10.

국세심사 결정사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결정요지

〈처분개요〉

청구인
2009년 1월부터 발생한
해외소득 무신고

처분청
2018년 10월
개인통합조사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

청구인
2018년 11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처분청
2018년 11월
불채택 결정

청구인
2018년 12월
심사청구 제기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9년 1월경부터 오스트리아 제약회사인 ○○ 유한회사의 홍콩법인 소속으로 국내에서 근무하며 급여(해외소득)를 수령하였으나 세무서 직원에게 신고여부를 문의한바, 담당자로 부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처분청은 2018. 10. XX.부터 2018. 10. XX.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수입금액 누락 000백만 원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8. 11. XX.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XX. 불채택 결정이 나자 처분청은 2018. 12. 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함.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8. 12. XX. 이 건 심사청구를 함.

판단

청구인은 세무서 직원 안내에 따라 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신의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신고의무는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고 모든 신고서의 작성은 납세자의 책임 하에 스스로 작성하여야 하는 점, 성실신고 지원안내문에는 해외입금수취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한편으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등으로 볼 때 직원 안내에 따라 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신의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8-0081, 2019. 3. 27.

질의 회신

Q

A

1)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

-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2) 연결납세 방식에 따른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방법

- ※ 법인세법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 질의내용 ①

고용 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제1안)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제2안)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회신요지

고용관계 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2020. 7. 29.

💡 질의내용 ②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최초 적용 사유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연결납세 방식 적용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규정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76조의22에 따라 최초의 연결사업 연도와 그다음 연결사업 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 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요지

연결납세 방식 최초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과 별개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규정 적용 가능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6, 2020. 7. 17.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즉시 감자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④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양영경 서울지방법국세청



목차

1. 서론

● 지난해에 게재

- 가. 대손세액 공제 제도의 의의
- 나. 출자전환에 관한 조세 문제

2. 대상 판결의 경위

- 가. 관련 법령
- 나. 사실관계
- 다. 이 사건의 쟁점
- 라. 1심 판결의 요지
- 마. 원심판결의 요지

3. 대상판결의 요지

4. 연구

- 가. 논의의 방향
- 나. 출자전환시 대손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검토

다. 대상판결상 법리 적용의 한계

라. 회생 진행에 투입된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추가 고려

5. 결어

다. 대상판결 법리 적용의 한계: 후속 하급심 판결의 동향

앞서 살펴본 대상판결의 사안과는 다르게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전부 무상소각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무상소각되고 남은 주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권이 경제적으로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¹⁾

이러한 일부 무상소각된 경우에 대하여 하급심에서 서로 다른 결론의 판결(이하 '비교사건')이 있었으나 모두 대상판결 선고 이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종결되었다. 이는 대상판결에서 실시한 법리의 적용 범위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회생절차와 관련된 많은 사건이 비교사건들과 같이 일부 무상소각되는 경우이고 오히려 대상 판결의 경우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가 검토를 위해 아래에서 비교사건 2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비교사건 A²⁾: 출자전환 후 일부 감자된 경우 대손 불인정 사례

비교사건 A의 경우는 약 26,0억 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약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 회생채권을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한 후, 출자전환된 주식은 700:1로 감자(병합)한 사안으로서 현금 변제받은 금액과 병합 후 주식의 액면가액(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25,6억 원에 대하여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채무자인 당해 사건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를 해당 부분만큼 부인하여 처분한 사안이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사건의 회생채권 중 공제액 해당 부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매출처 회사들의 대손세액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해당 사건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①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의 약 1.1%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여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현금변제가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② 출자전환에 있어서 기존 채권의 변제 범위는 원칙적으로 출자전환주식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출자전환주식의 효력 발생 이후의 감자는 출자전환을 통하여 이미 주

1) 이종혁, "울촌판례평석: 회생계획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이 무상 소각되면 대손세액에 해당", Daily NTN 기획특집(2018. 10. 5.).

2)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5누60657 판결이 대법원 2019. 5. 13. 선고 2019두31853 판결로 심리불속행 종결되었다.

주가 된 회생회사의 채권자들과 회생회사 사이의 자본거래에 불과하다.

- ③ 이 사건 채권자들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비율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 및 변제되었음에도 추가 대손세액 공제를 통하여 환급받게 되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대손세액 공제분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조세채권이 발생하며 회생회사는 그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인 회생회사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데 곤란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회생채권자들의 채권은 후순위채권이 되는 결과가 되어 회생채권자 사이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 ④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되는 채무 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발행예정 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이유로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 합의제 판결 참조).
- ⑤ 대상판결은 출자전환 주식을 전부 무상소각하기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로서 이 사건과 같이 출자전환 후 일정 비율의 주식병합을 통한 일부 감자를 하는 경우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주식 가치가 상승 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되거나 가치가 0원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어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비교사건 B³⁾: 출자전환 후 일부 감자된 경우 대손 인정 사례

비교사건 B의 경우는 현금변제 외의 부분이 출자전환된 후 20:1로 주식이 병합된 경우로서 회생채권의 장부가액 2.2억 원과 시가 0원과의 차이에 대하여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면서 채무자인 당해 사건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를 해당 부분만큼 부인하여 처분한 사안으로 비교사건 A와는 사실관계에서의 큰 차이는 없다.

위 사건에서는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⁴⁾과 아래의 사실판단을 기초로 출자전환된 신주의 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그 금액 상당의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3) 부산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구합22368 판결로서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8. 6. 15. 선고 2017누24899 판결에서 그대로 인용되었고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9581 판결로 심리불속행 종결되었다.

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70121 판결 등 참조.

- ①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는 약 16만 주의 신주를 출자전환으로 취득하였다가 병합을 통해 약 8,000주로 감자되어 실질적으로 소각된 주식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하여 통상의 출자전환과는 달리 단지 형식상으로만 출자전환의 외관을 취하였을 뿐 무상감자를 통하여 소각된 주식 부분은 채무의 면제와 다를 바 없다.
- ② 법인세법상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채권의 장부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은 부가가치세부담에 있어서 실질상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로부터 대손세액 공제마저 배제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즉 회생계획인가 결정에서부터 출자전환과 무상감자를 예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출자전환된 신주 중 무상감자 및 소각된 주식을 보유한다고 볼 수는 없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바 무상 감자되어 소각될 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 ③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이해관계인들은 그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고 무상감자는 결정에 따른 실행행위에 불과하여 출자전환 형식을 빌려 채무면제를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안으로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한 부분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④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을 회수하였다고 본다면 채권자는 주식의 무상감자·소각으로 손실을 입은 것에 더하여 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액까지도 부담하는 반면, 원고는 출자전환 및 무상감자를 통하여 채무의 면제라는 이익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할 가능성도 없는 데다가 자신이 부담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조세부담의 형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그런데 비교사건 B의 판결은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0원을 정당하게 산정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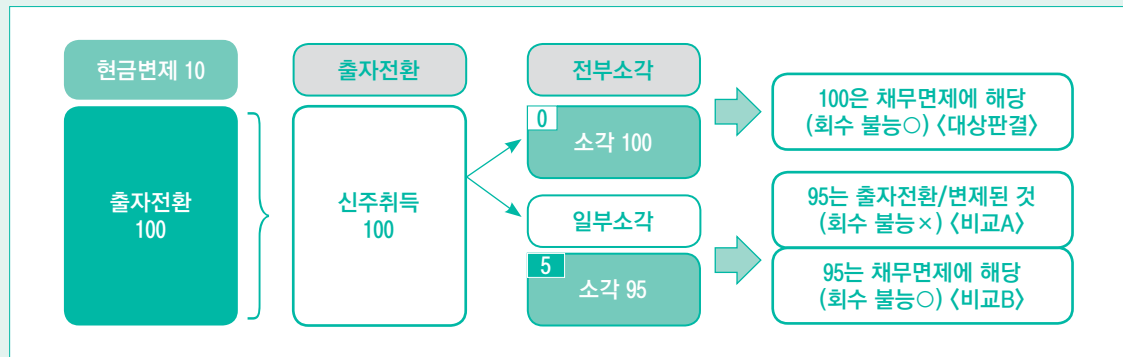
(3) 시사점: 출자전환 후 일부 감자된 경우 대상판결 법리 적용의 한계

비교사건 판결들의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출자전환으로 채권 대신 주식을 취득한 상태에서 취득한 주식이 무상소각되어 전부 사라진 대상판결의 경우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장래 주식의 가치가 어떻게 변동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식이라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출자전환 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대상판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위 2가지 비교사건의 판결은 비록 2건 모두 피고의 처분이 위법함을 판시하기는 했지만, 비교사건 A에서 판

단은 대상판결 1심과 같이 출자전환된 부분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회수불능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지만, 같은 사안에 대하여 비교사건 B에 대하여는 대상판결과 같이 실질적으로 채무면제에 해당하여 회수불능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림 4〉 대상판결 및 비교사건 판결의 결론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앞서 본 대상판결에서 다루지 않은 논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본다.

- ① 잔존주식 이익에 대한 사후조정이 가능한 경우 완화된 대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상판결 및 비교사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대손 이후에 회수한 경우 다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 비추어 무상감자 후 소각된 부분을 회수불능으로 보아도 적극적으로 다시 회수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이를 다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는 사업자가 일단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 처리한 금액이 사후적으로 회수되는 경우에 관한 처리방안을 동시에 마련해 두고 있다.

이같이 채권자들이 감자 후 남은 주식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때 가서 채권자들은 해당 금액을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고 채무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 무상감자의 경우에는 회수불능 판단에 있어서도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일부 무상감자된 주식과 잔존주식은 명백하게 서로 다른 것이다. 즉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 채권자들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 이에 따라 과세처분을 내린 대상 채권의 금액은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후 감자된 주식 부분에 상응하는 채권액에 해당하는 것인 반면, 주주의 지위 유지 및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향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감자 이후 남은 주식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서로 명백히 다른 것이다.

- ③ 대상판결의 취지에 따라 실질에 대한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 즉 채권자들이 출자전환 및 무상감자 이후 극히 소액의 주식을 갖게 된 것을 두고 채권을 전액 변제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잔존주식이 상당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는 대신 가치가 거의 없는 회생회사의 주식을 받은 후 그나마 대부분이 무상감자가 이루어지고, 추후 회생에 과연 성공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회사의 주주로서 남은 지분에 대해서나마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채권 전액 변제에 상응하는 이익을 그대로 향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뿐만 아니라 향후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잔존한다고 보더라도 비교 사건들의 경우와 같이 700:1, 20:1의 비율에 의한 감자가 이뤄진 경우 향후 주식의 가치가 갑자기 수십 배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회생절차를 통해 손실을 입게 된 결과는 반복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주식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대손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④ 시가 산정의 문제가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과세 실무상 순자산평가액인 '0원' 또는 액면가액을 잠정적인 시가로 하여 채권자들은 대손세액 공제의 경정청구를 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은 채무자에게 부과처분을 하고 있는데 비교사건들의 판결들은 공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손세액 공제 사유의 존재 및 공제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게 지우면서 증자 등 이후의 출자전환된 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가 필요함을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사건들에서 채무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랐지만, 공히 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단순히 무상소각 이후의 잔존 주식 액면가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적절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이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커다란 숙제가 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이 개정되어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를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대손 금액을 출자전환 시점의 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차이로 정하여 대상판결의 취지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는 의의가 있으나 과연 앞서 본 비교사건들의 판결과 같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시가를 산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채권자들의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경정청구를 심리하는 단계에서부터 관련 회생계획 및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자료가 충분히 제출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납세협력 비용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시가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라. 회생 진행에 투입된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추가 고려

대상판결 및 비교사건에 대한 논의에 추가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후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무상감자와 소각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 추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손세액 공제 여부가 회생인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원고에 대해 대상판결 사건을 비롯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대손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었다.⁵⁾ 회생인가 결정으로 최종적으로 약 50억 원의 자본금으로 회생을 진행 중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회사 운영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고,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돕기 위한 회생 제도에 반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과세형평 측면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채권자들과 그렇지 않은 채권자들이 회생절차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 대상판결이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2) 채무면제액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

대상판결에 따르면 출자전환한 채권가액[신주발행 후 소각된 580억 원(=625억 원-45억 원), <표 4>(『국세』 7월호 36p)의 자본 금액 변동 참조]은 그 전액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인데 채무자인 원고 입장에서는 580억 원 전액이 출자전환된 것이 아니라 채무 면제받아 소멸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정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에 해당되어 익금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잔액에 대하여 예상하지 못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위 (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세금 상 부담이 원고의 회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3) 실질적인 회생절차 종결의 의미를 고려할 필요성

<표 1>(『국세』 6월호 36p)에서 본 바와 같이 2010~2017년 기간 중 합의사건 기준으로 약 6,500여 건의 회생계획 신청이 있었고, 약 4,700여 건의 인가 결정이 있었는데, 같은 기간 회생계획이 취소 또는 폐지된 경우가 3,200여 건에 달하고, 종결된 경우는 1,200여 건에 지나지 않았다. 실무상으로 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회생절차 종결(구 채무자회생법 제247조)을,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폐지(제

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대상판결 원고의 감사보고서 주석 등의 내용에 따르면 대상판결 사건(4.5억 원) 외에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동일 사안에 관한 처분이 있었다.

288조)를 주로 하고 다른 제도(취소 결정, 불인가결정 등)는 별로 이용되지 않는데 종결의 요건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는 점⁶⁾에 비추어 실제 출자전환된 부분의 변제까지를 종결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종결된 경우라도 출자전환된 부분까지 변제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를 종결한 기업에 대한 실증분석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는 기업들도 회사정리 이전에 비해 회사정리 종결 이후의 단기성과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사정리절차 종결 이후 12개월 동안의 단기성과도 비교 가능한 유사업종 기업군에 비해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는 기업들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경제적 갱생 가망성이 내재적으로 낮은 기업일 수도 있어 계속적인 영업능력이 없는 부실기업을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회생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다.⁷⁾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회생인가 결정의 결과로 과연 현금변제 부분 외에 출자전환된 부분까지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출자전환 후 일부 감자되어 남은 주식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평가될 만한 수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5. 결 어

대상판결은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을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하기로 한 경우 사실상 채무면제와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세액으로 공급자인 채권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급받은 사업자인 채무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공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실질과세 측면이나 부가가치세법 취지에 따라 합목적으로 해석한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다만 비교사건들과 같이 전부 무상소각이 아닌 일부 무상감자 및 소각의 경우에 대하여는 대상판결의 취지에 살려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판단과 대손세액 공제액의 산정을 위한 출자전환주식 시가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여러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대법원에서도 아직 명시적인 판결을 내린 바가 없어 최근 부가가치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석상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6) 김택수, "기업회생 이론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6. 3.), 958~963쪽.

7) 강경이·이상원, "회생절차종결기업의 단기성과와 성과요인의 분석", 대한경영학회지 제22권 제5호 (2009), 2851~2872쪽.

조세의 헌법적 규제 ②



최선집 국세청 고문 변호사



목차

이전: 지난해에 게재

Ⅲ. 조세법의 위헌심사기준

1. 실질적 법치주의
2. 헌법상 평등원칙의 조세법상 적용
3. 비교법적 검토

Ⅳ. 결어

Ⅲ. 조세법의 위헌심사기준

1. 실질적 법치주의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의 조세법률주의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한 규제뿐만 아니라 목적이나 내용이 헌법상 기본권보장의 헌법 이념의 제(諸)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¹⁾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서 적용된 헌법상 원칙을 분류하여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기존의 이 같은 결정에는 절차의 법정과 적정성에 관한 결정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1) 내용의 법정: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²⁾, 조세 법률주의³⁾, 위임입법의 한계⁴⁾

2) 내용의 적정성: 조세평등주의⁵⁾, 헌법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 규정⁶⁾, 재판청구권⁷⁾, 실질적 조세법률주의⁸⁾, 비례원칙⁹⁾, 재산권 보장

1) 93헌바49, 90헌가69 등 참조. “憲法은 제38조에서 國民의 納稅의 義務를 규정하는 한편 國民의 財産權 保障과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법治安정성을 위하여 그 제59조에서 租稅法律主義를 선언하고 있는바, 오늘날의 法治主義는 實質의 法治主義를 의미하므로 憲法상의 租稅法律主義도 課稅要件이 형식적 의미의 法律로 명확히 정해질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租稅法의 목적이나 내용이 基本權 保障의 憲法理念과 이를 뒷받침하는 憲法상의 諸原則에 합치되어야 하고, 나아가 租稅法律은 租稅平等主義에 입각하여 憲法 제11조 제1항에 따른 平等의 原則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2) 2002헌바2, 94헌바14.

3) 2001헌가5.

4) 2001헌가5.

5) 90헌가69. 2015. 5. 28. 2014헌261·262, 2010헌바396, 2002헌바70, 96헌바14 등 다수.

6) 2001헌바82.

7) 2000헌바30.

8) 96헌바36 등.

9) 2004헌가22.

침해¹⁰⁾, 과잉입법 금지¹¹⁾,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자기결정권 혹은 자기책임 원칙¹²⁾,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¹³⁾, 법익균형성 원칙¹⁴⁾, 진정소급 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의 원칙¹⁵⁾, 법익침해의 최소성 원칙¹⁶⁾, 소급과세 금지 원칙¹⁷⁾

2. 헌법상 평등원칙의 조세법상 적용

조세법상 헌법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이슈가 생기는 부분이 바로 헌법상 평등 원칙의 조세법상 구현(具現)인 조세평등 원칙이다.

1) 조세평등 원칙 위반 조세 규정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평등원칙 혹은 조세평등 원칙을 조세법에 적용하여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안은 의외로 많지 않다.

- ① 가산세부과에서의 평등원칙 적용: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고와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는 자와 동일한 율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또한 가산세 산정 시에 취득세가 미납된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¹⁸⁾
- ② 부부합산과세: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 취급에 해당된다고 하여 평등원칙 위배라고 판단하였다.¹⁹⁾
- ③ 재산분할에 제한적 증여세 과세: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에 관하여 배우자상속과 이혼 시 재산분할의 재산 관계의 본질적이고도 다양한 차이점을 무시하고 이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다룸으로써 자신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 받은 혼인당사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조세

10) 90헌가169, 2010헌바430~.

11) 96헌가19 등.

12) 2001헌가25.

13) 2009헌바35, 82.

14) 2009헌바146.

15) 94헌바37.

16) 2002헌바80.

17) 2016헌바275.

18) 2003헌바16.

19) 2001헌바82.

평등주의에 위배된다.²⁰⁾

- ④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 정도 및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 등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하여는 고려함이 없이 소정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 보장은 도외시킨 채 조세징수의 확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또 과점주주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과 그 조세 분야에서의 실현형태인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²¹⁾
- ⑤ 공매계약 보증금의 국고 귀속: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규정이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지 않고 배당 재원에 포함시키는 것과 비교하여 국세징수 절차상 체납자 및 담보권자를 민사집행 절차상 집행채무자 및 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재산적 이익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²²⁾
- ⑥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 규정이 없고, 공유재산이라고 하여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할 당위성도 없으며, 부동산 가격의 양등(昂騰)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세제의 불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며, 이미 헌법재판소는 자산소득의 부부간 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한 바 있으므로 적절한 차별 취급이라 할 수 없다.²³⁾
- ⑦ 주민세의 가산세산정방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의무와 법인세할 주민세의 세액을 납부할 의무라는 두 가지 의무를 가리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 조항이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만을 불이행한 사람과 두 가지 의무 모두를 불이행한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20) 96헌바14.

21) 93헌바49, 94헌바38 · 41, 95헌바64(병합).

22) 2007헌가8.

23) 2006헌바112, 2007헌바71 · 88 · 94, 2008헌바3 · 62, 2008헌가12(병합).

또한 자진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자들 사이에서도 그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²⁴⁾

- ⑧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²⁵⁾

2) 소득 성격과 조세평등 원칙

이러한 평등원칙의 조세법 적용에서의 주목할 점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소득 유형이 다름에도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하여 조세평등 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는 점이다. 즉 소득 성격에 따른 과세는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고 있다.

“특정소득을 어떤 소득 유형에 포함시킬 것인지, 나아가 특정한 소득 유형에 속하더라도 이를 분리과세 할 것인지 또는 구체적인 세액산정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필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이 부동산매매업자와 다른 사업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²⁶⁾라고 한 결정이 그 예이다.

나아가 이자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법률조항이 평등원칙 위배가 아니라면서 실시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 소득의 성질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한 그 합리성을 부

24) 2004헌가122.

25) 97헌가13.

26) 2015헌바339.

정할 수 없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²⁷⁾

3) 조세법은 특히 강한 합헌성 추정을 받아 기본적으로는 그 정립에 관하여 입법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법원으로서 입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예외적으로 조세법 분야에서도, 예를 들면 성별과 같은 헌법 제11조 제1항 후단 소정의 사유²⁸⁾에 기하여 차별이 행해질 때는 합헌성 추정은 배제되고, 법원은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그 차별이 합리적인지를 심사해야 하고, 평등원칙에 반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적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소득의 성질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하는 취급의 구별’에 관하여는 엄격한 기준에 의한 심사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되면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거로 조세 위헌 판단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헌법상 평등원칙은 조세 관련 입법 재량을 통제하는 기능을 거의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3. 비교법적 검토

1)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법률의 위헌성 심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가장 엄격한 기준(Strict Scrutiny)은 정부의 불가피한 목적(Compelling State Interests)을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어 반드시 필요한(Necessary) 차별이다.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결혼·임신, 자녀 양육, 낙태 등의) 프라이버시의 자유, 투표권의 행사 등 기본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경우 작용된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심사정도(Intermediate Level of Scrutiny)는 정부의 중요한 목적(Important Governmental Objectives)에 실질적으로 연관(Substantially Related)되어 있을 경우에 허용되는 차별이다. 여기에는 성적 차별, 혼외출생자에 대한 차별 등이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가장 낮은 단계의 심사기준인 평등 원칙은 이 이외의 모든 사유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부의 합법적 목적(Legitimate Governmental Purpose)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 관련성(rational relation)이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조세법의 위헌성이 결과적으로 엄격한 기준(Strict scrutiny) 혹은 중간 심사(Intermediate Scrutiny)의 대상에 이르지 않는다면 필자가 아직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합헌성 추정이 될 것이다.

2) 독일의 경우

그렇지만 독일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보면 기본법 제3조 제1항(평등 원칙: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27) 2000헌바54.

28)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위반을 이유로 한 조세법의 위헌판결이 상당이 많다.

① 1995년 6월 22일 결정²⁹⁾: 재산세법 제10조 제1항은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다.

입법자는 과세대상의 선택이나, 세율의 결정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결정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요건의 규율에는 입법자는 부담에 관하여 일단 내려진 결정을 부담의 평등이라는 의미에서 수미일관(首尾一貫)되게(Folgerichtig) 입법화(Umsetzen)하여야 한다.

② 2006년 11월 7일 결정³⁰⁾: 상속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여기서는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내용으로서 수미일관성의 원리라고 하는 용어가 명기되어 있다.

㉠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일반적 평등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기는 입법자의 한계는 규율대상과 구별의 기준(Merkmal)에 따라 단순한 자의(恣意)의 금지에서 비례원칙의 엄격한 구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조세법 영역에서 입법자는 과세대상의 선택에서도 세율 결정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 입법자의 이 원칙적 자유는 응능부담과 수미일관성의 원리에 의하여 한정된다.

㉢ 평등조항은 조세법에서는 조세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거기서 과세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납세의무자는 이 원칙에 따라 조세법률에 의하여 법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동일하게 부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

㉣ 조세법의 과세요건을 설계함에 있어 입법자는 부담에 관하여 일단 내려진 결정을 부담의 평등이라는 의미에서의 수미일관하여 입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미일관한 입법화에 예외를 두는 경우에는 특별한 실질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 상속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입법자의 결정은 부담이 평등하게 되어 있지 않고, 수미일관하여 입법화되어 있지 않다.

③ 2008년 12월 9일 판결³¹⁾: 소득세법 제9조 제2항 제1문, 제2문은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 사건은 통근비 세액공제 사건으로 불리는 유명한 사건으로 위 수미일관성의 법리를 인용하면서 통근비의 세액공제를 채용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을 수미일관되게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결정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특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소득세법 제9조

29) BVerfGE 93, 121, 工藤達朗, 위의 책, 9쪽 재인용.

30) BVerfGE 117, 1, ibid, 10쪽.

31) BVerfGE, 122, 210, ibid, 11쪽.

제2항 제1문은 수미일관성을 결여하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 ④ 2014년 12월 17일 결정³²⁾: 상속세법 제13a조, 제13b조는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다.

여기서도 결정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여기서는 ‘조세법상 과세요건의 수미일관한 형성의 요청’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그리하여 상속세법 제13a조, 제13b조가 우대재산을 상속·증여세에서 면제한 것은 필요성 심사를 행함이 없이 중소기업 영역에 부과가 행하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예외규정에 충분한 정당화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이다.

- ⑤ 2017년 7월 23일 결정³³⁾도 토지등록면허세법 제8조 제2항은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결정도 위 수미일관성에 관한 내용을 일반론으로 서술하면서, 특별 과세기준의 정당화에는 중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것이 여기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등록면허세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불평등한 취급은 기본법 제3조항에 위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결정에서 평등원칙의 내용으로서 강조된 것이 수미일관성의 원칙(Folgerichtigkeit)이다. 수미일관성의 원칙은 법규에 대하여, 논리일관성, 항상(恒常)성, 무모순성(Widerspruchsfreiheit)을 요청한다. 입법자가 어떤 생활영역의 질서에서 기본 결정을 내렸다면, 그 이후의 법률은 그 결정에 모순되지 않고 수미일관된 내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입법자는 조세법의 제도설계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지만, 일단 결정한 기본방침을 조세법 질서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수미일관되게 유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외적으로 기본방침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예외의 강도에 따른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위반이 된다.

IV. 결어

만약 이러한 수미일관성의 원칙을 국내에 도입하여 조세법의 위헌성 심사를 한다면 상당한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수미일관성의 원칙을 조세법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 및 비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는 입법자

32) BVerfGE, 138, 136, Ibid, 11쪽.

33) Ibid, 11쪽.



가 과거에 제정한 법률에 구속된다고 하는 점(입법자의 자기구속)을 전제로 하지만, 이는 신법우선원칙과 충돌한다. 또한 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입법은 헌법적 질서에, 집행권 및 재판은 법률 및 법에 구속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집행권과 재판은 법에 구속된다고 하지만 입법자를 법률에 구속시키지는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왜냐하면 의회의 새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제의 요청이기 때문이다. 수미일관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와는 일치하나, 민주제의 원리와는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헌법원리 상호간의 조정을 기다려야만 할 것이라는 견해가 등장하는 이유이다.³⁴⁾ 그러나 신법과 구법에서의 헌법적 정합성을 찾아내어 신·구법 중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 조항에만 자기구속성을 부여한다면 다시 말하면 수미일관성을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하였다면 당초부터 이러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판의 결론이 수미일관성을 상실한 채 상이한 경우가 더 문제일 것이다. 소득세이든 재산세이든 원본 자체를 잠식하는 조세는 사유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반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조세가 아니라 과징금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로 인하여 원본 자체가 잠식되는 경우로 소득세³⁵⁾의 본질인 토지초과이득세의 본질에도 반함으로써 헌법 제23조가 정하고 있는 사유재산권 보장 취지에 위반된다.”³⁶⁾라고 판단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³⁷⁾는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부과로 인하여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³⁸⁾라고 하고 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이미 조세 비용(Tax Cost)를 지불하고, 즉 이미 세금납부(소득세 혹은 증여세)를 한 재원으로 취득한 재산이다. 그러함에도 원본을 침해하는 과세라면 사유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반된다.

34) ibid, 13쪽.

35)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종합적 담세력의 표지로서 소득을 직접 대상으로 하면 소득세라 부르고, 납세자가 소유하는 생산요소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대상으로 하면 수익세라고 부른다.

36) 92헌바49 등.

37)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이 중에는 실질적으로는 재산이 가져오는 수익을 예상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수익세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취득가액 50억 원인 건물의 시가에 매년 50%씩 부과하는 재산세가 있다면 이 재산이 시가에 변동이 없다면, 2년이면 원본이 없어지게 된다. 그다음 해부터는 원본 잠식을 넘어 재산 소유 사실이 담세력의 표지가 될 수 없게 된다. 시가가 얼마나 변동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을 것이다.

38) 2006헌바112 등.

세법상 서류의 공시송달

납세고지를 중심으로



장성두·안현국 변호사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3. 송달의 효력
4.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제도
5.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서류의 송달이란 세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그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처분의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송부·전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등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및 징수처분은 그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 이 중 납세고지는 과세처분 및 징수절차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완결되고 징수절차는 납세고지에 의하여 개시된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의하여 그 방법, 절차 및 효력이 규율되고 있다. 다만, 조세소송에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상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하에서는 납세고지를 중심으로,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과 송달의 효력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및 쟁점,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

2.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가. 송달의 요건

송달은 법에 규정된 송달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즉 송달은 장소적 요건과 인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송달의 장소적 요건과 관련하여,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서류의 명의인(수신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에서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다만,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 종전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고,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4, 5).

한편 송달의 인적 요건과 관련하여, 서류의 수령은 명의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 권한의 위임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는 통상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을 수령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었던 경우 등에는 송달수령권한의 묵시적 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나. 송달의 방법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교부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하는 것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보충송달),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유치송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납세의 고지·독촉·채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우편송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에 관한 규정은 우편송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한편 공시송달이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나 우편에 의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은 교부송달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송달방법이다.

3. 송달의 효력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령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한다. 다만, 송달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적인 수령을 요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앞서 살펴본 서류의 송달과 관련된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 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거나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송달방법을 위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그 송달은 부적법하고, 송달이 부적법하면 그 과세처분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1414 판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553 판결).

4.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제도

가. 공시송달의 사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로서 (i)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제1호), (ii)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iii)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및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러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들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시송달은 교부송달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송달방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1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국교관계가 맺어 있지 않거나 단절되어 있는 경우, 국제우편에 관한 조약관계가 없는 경우, 전란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¹⁾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① 미국의 우체국이 미국에 있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3회에 걸쳐 그의 주소지로 도착사실을 알리는 통지를 하였으나, 이를 전달하지 못하고 'Unclaimed'라는 사유를 붙여 한국에 반송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나(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393 판결), ② 과세관청이 외국 법인인 납세자가 본점의 소재지인 프랑스로 완전히 철수하여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프랑스에 있는 사실과 납세자의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송달 등에 의한 방법으로 프랑스에 있는 본점의 소재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납세자가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막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20535 판결). 이에 비추어 보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송달의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반하는 공시송달 방법으로서 위법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11-0-1 제2항은 여기서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주거지로 출장을 나갔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세무공무원으로서 이웃집이나 통·반장 등에게 탐문하여 위 의무자의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그 제2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또한 대법원은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납세관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 되나, 외국법인인 납세자가 납세지인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

1) 김병일, "채납처분에 있어서 국외송달문제", 조세법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세법학회(2009), 101쪽.

였다고 하여 막바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20535 판결). 이에 비추어 보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i) '송달할 장소'에서의 '수취인 부재' 및 (ii) '납부기한 내 송달 곤란'이라는 공통된 요건 아래, (iii-1)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iii-2) 세무

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할 것을 선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폐문 부재,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시하였는데(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4246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1996. 12. 30.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위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수취인 부재의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 사유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가 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한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주소 또는 영업소를 더는 확인하지 않고도 곧바로 공시송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제이며, 과세처분의 중요성과 국세기본법의 공시송달이 예외적인 송달 방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송달의 요건을 지나치게 넓게 확대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편의에 치우친 규정이라는 비판이 다수 있다.²⁾

납세의무자가 우편집배원 또는 세무공무원의 방문 시에 송달장소에서 잠시 벗어나 있었다고 하여 불복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세행정의 편의에 치우친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이익과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수취인 부재'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 공시송달 규정은 국민의 헌법상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은 물론, 가산금의 가산, 책임재산의

2) 박설아, "세법상 서류의 송달", 석사학위 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2012. 2.), 157쪽.

압류 등 불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³⁾ 대법원 역시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의 문언과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 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 소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또한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에 2차례 동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2차례 납세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납세자의 부재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세무공무원이 형식적으로 2회에 걸쳐 동기우편을 송달하거나 납세자의 주소지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이같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의 규정이 공시송달의 사유로 신설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납세고지를 중심으로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송달의 효력,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제도 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았다.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대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인바, 실무에 있어서도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한 국세기본법령의 규정을 유념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장석조, “공시송달의 사유를 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헌법합치적 해석”, 대법원 판례해설 제35호, 법원도서관(2001), 778쪽.

반갑습니다

시흥세무서

올해 6월 시흥세무서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관할지인 시흥시 배곧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됐다는 소식이다.

시흥시로서는 약 7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고용효과까지 기대되는 호재다.

꿈틀거리는 지역의 활기에 함께 발맞추고 있는 시흥세무서를 찾아가 본다.



시흥세무서

위치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368

연혁

- 1996. 7. 광명세무서 시흥지서로 신설
- 1999. 9. 안산세무서시흥지서로 조직개편
- 2004. 4. 시흥세무서 개청(시흥시 및 광명시 관할)
- 2016. 6. 시흥세무서 광명지서, 광명세무서로 개청

층별 구성

- B1 - 대회의실
- 1층 - 체납징세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2층 - 재산법인세과, 운영지원팀
- 3층 -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 4층 - 조사과,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지역의 부흥을 준비하는 세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였던 시흥 배곧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면서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글로벌 기업 유치에도 유리해졌다. 2027년까지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단지와 글로벌 교육·의료 복합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데 시흥시 배곧 지구는 서울대, 한국산업기술대, 경기과학대 등의 대학은 물론, 5km 이내의 시흥스마트허브, 시화 MTV 등 국가산업단지와 기업들과의 협업이 가능한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협력해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도 설치될 예정으로 1만 6,000여 명의 고용 효과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로 약 7조원을 거둘 것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내다보고 있다.

서해안시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원대한 꿈을 품은 시흥에서 지역에 불어올 경제발전의 순풍을 맞이할 준비를 함께 하고 있는 시흥세무서는 경제발전의 사각지대에서 혹여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그늘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꽃을 구매한 후 출근하는 세무서 직원들에게 세무서장이 직접 장미꽃을 전달하며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직원들을 격려하는 로즈데이 행사를 하였다. 이 일로 현장소통 우수기관(장려상) 포상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된 것은 시흥세무서 직원 모두에게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세무서 관내에 독립된 별채의 직원 합숙소가 있는 것도 시흥세무서의 자랑이다. 합숙소는 30인 규모로 현재 29명의 직원이 이용하고 있는데 합숙소 옥상에 평상, 파라솔 등이 설치되어 있어 합숙소 직원들이 더욱 돈독해지는데 한몫한다.

산업단지의 조성·신도시(주택지구)

개발·광역 교통망 구축 등 앞으로 발전할 일들이 가득한 시흥.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납세자들의 편의와 공정한 세무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시흥세무서의 다짐이 비장해 보인다.



반갑습니다

시흥세무서
사람들

세무서복클럽

시흥세무서 직원과 함께 책, 책, 책을 읽읍시다!



당신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책을 읽다가 보면 가끔은 밑줄 긋고 싶은, 살아있는 문장들을 만나곤 한다. 많은 저명인사와 시대적 영웅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어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힘센 책들, 시흥세무서 직원들에게는 그 어떤 책들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도끼가 되었을까?

내가 책을 사랑하는 이유

책을 좋아하는 시흥세무서 4명의 직원이 저마다 책 한 권씩을 손에 들고 모였다. 『국세』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에 모두 흔쾌히 시간을 내어 책을 준비해왔다.

5년 차 국세인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체납징세과 이효정 조사관은 마운틴 뷰인 자신의 아파트 창가에 소파를 배치해 산을 바라보며 책을 읽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그녀는 소위 ‘벽돌책’이라고 불리는 두툼한 인문학 서적을 좋아한다.

“이과생 출신이라 인문학적 배경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읽는 속도가 느립니다. 잘 안 읽혀도 연필 들고서 몇 주간 읽다 보면 언젠간 마지막 페이지가 와요. 그때의 뿌듯함이란!”

부가가치세과 정은재 조사관은 미디어에서의 책 소개를 귀담아들었다가 챙겨 읽는다. 좋아하는 분야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로 특히 이스라엘의 석학 유발 하라리의 책들을 좋아한다.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그 역사 속에 나타났던 사회현상을 뛰어난 통찰력으로 해석해주며,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더하는 그의 책들은 인문학의 종합선물세트라 부를 만하죠.”

소득세과 이여성 조사관은 독서 ‘습관’이라고 말할 수 없는 독서 습관을 지녔다. 책의 장르부터, 시간, 독서량까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이다. 한가지 일관된 점이 있다면 침대, 탁자, 책상 어디에서라도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늘 책이 있다는 것.

“주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좋아해요. ‘사노요코’라는 일본 할머니 작가의 『사는 게 뭐라고』, 『죽는 게 뭐라고』, 『자식이 뭐라고』 등 ‘뭐라고’ 시리즈 같은 책이죠. 연륜에서 묻어나는 삶에 대한 통찰력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재미까지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막 돌이 지난 아들을 둔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범석 조사관은 요즘 육아에 관심이 많다. 전보다 책 읽을 여유가 없지만, 틈틈이 육아 관련 독서를 할 계획이다. 어릴 때는 만화책을 섭렵했던 박범석 조사관이지만, 득남 이후 독서 취향도 ‘아빠 모드’로 전환됐다.

“어릴 적 어느 만화책방의 누적 대여량이 3천 권을 넘긴 곳도 있었어요. 스무 살 이후로는 역사물에 관심이 생겼고, 아빠가 되니 육아 서적이 눈에 들어오네요.”

저마다 선호하는 장르는 달라도 책이 주는 은밀한 즐거움에 흠뻑 빠져 사는 사람들. 이들이 안 내하는 독서의 기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나에게 있어 책이란?

내 인생의 책, 나누고 싶은 한마디

체납 업무를 하다 보면 사람들과 납부 약속으로 늘 밀고 당기기를 합니다. 체납자들의 사연은 다양해서 듣다 보면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이 떠올라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악질 체납자도 있지만, 본인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휘말려서 고액의 체납이 발생해 틈나는 대로 몇만 원씩 납부하는 분도 있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모두가 여행, 외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니 책을 통해서라도 대리 여행을 하실 수 있게 여행을 추천하고 싶어요. 『빌 브라이슨의 대단한 호주여행기』라는 책인데 저자인 빌 브라이슨 작가가 기자 출신이어서 글이 참 매끄러운데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일반 관광객이라면 방문하기 힘든 오스트레일리아 내륙 지방(자구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울루루)까지 대리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체납징세과
이효정 조사관

저에게 독서는 가성비 좋은 취미입니다. 1만 5,000원 정도면 일주일을 알차게 보낼 수 있잖아요. 독서계획을 따로 세우진 않아요. 재미없으면 가차 없이 덮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독서에 대한 흥미는 요즘 말로 '책 바이(by) 책'이니까요.



부가가치세과
정은재 조사관

닭가슴살은 어떨 때는 맛있고 어떨 때는 먹기 힘들기도 하지만 분명 건강에 도움을 주잖아요. 책도 그래요. 재미있을 때도 있고 좀 어려울 때도 있지만 분명 제 인생에 영양분이 되죠.



저는 어렸을 적 사이언스북스에서 출간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으며 천문학자의 꿈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1980년대 당시 보이저1호가 명왕성 근처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조준해 찍은 사진을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명명했죠. 우주 공간에서 지구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알기 힘든, 말 그대로 창백한 푸른빛을 내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살고 있고,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이 있으며, 역사 속에서 서로를 증오하고 지배하려 노력해왔던 이 지구가 태양 빛 속에서 부유하는 우주 속의 티끌이었다는 과학적 탐구는 우리에게 철학적 물음을 던져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나에게 책이란
'가난한 마음을
잊기 위한 방법'

소득세과
이여성 조사관

보자마자 무릎을 '탁' 쳤던 독서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사노요코'의 책에서 봤던 표현인데 '가난한 마음을 잊기 위한 방법', 독서에 대해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요? 독서란 모름지기 지적 허영심이죠.



저는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토머스 맬서스 『인구론』, 최인훈의 『광장』, 사마천의 『사기』, 하인리히 뮐러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총 6개 작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청춘의 독서』의 『죄와 벌』 챕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악한 수단을 사용한 데 따르는 정신적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문장에 오롯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청춘의 독서』는 평소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고전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해주기 때문에 어려운 책을 비교적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여운이 깊은 책입니다. 오디오북도 출시되어 있으니 출퇴근길 차 안에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책이란

'짧은 시간,
깊은 여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범석 조사관

역사물을 좋아하신다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도 소장하고 있는 책인데 고대 로마의 국가 시스템이나 통치계층의 책임의식과 희생 정신, 국가 전체가 목표를 가지고 급하지 않게 소처럼 움직여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도시국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를 만들어낸 결과를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고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조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한 번쯤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인 이야기』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고 말합니다. 카이사르는 사람들의 그런 특성을 잘 이용한 사람인데, 카이사르는 본인이 원하는 길을 함께 하기 위해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을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영상 미디어의 영향력이 높아졌지만, 독서는 영상에 비해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있으며 영상보다 깊은 여운을 줍니다. 독서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본인의 흥미 분야 책을 찾는 거예요.

남들이 읽는다고 너무 어려운 책을 읽을 필요는 없죠.

삶을 빛나고 풍성하게 하는 독서의 힘

“내가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으니, 그건 책에 의해서였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1905~1980)는 독서의 힘을 이 한 문장으로 농밀하게 압축한다. 인간은 생각으로 성숙해지고, 생각으로 길을 연다. 생각은 ‘삶의 나침반’이다. 나침반을 쥐고 걸으면 험한 세상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책은 삶의 기둥, 사유의 촛불, 감성의 씨앗으로 삶을 영글게 하는 알찬 거름이자 최고의 보약이다. 씹을수록 생각이 우러나는 ‘신비의 껌’이다.



세상을 실은 작은 나룻배

법정 스님은 “지식은 밖에서 들어오고, 지혜는 안에서 우러난다.”라고 했다. 뜻이 깊은 말이다. 삶은 책이라는 바다에서 지식을 낚아 올리고,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지혜를 길어 올린다. 얇과 지혜는 동전의 양면이다. 얇이 세상 속에서 농축될 때 비로소 삶을 비추는 지혜가 된다. 얇은 통찰, 직관과 함께 지혜를 받치는 세 발 축이다. 책이란 바다에서 얇을 낚아 올릴수록 지혜는 더 빛이 난다. 통찰과 직관의 뒷면에도 얇이 붙어 있다. 세상은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책은 우주의 이치, 세상의 길, 지식과 지혜, 창 의와 직관을 오롯이 품고 있는 작은 나룻배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것을 건져내는 게 바로 책이다. 독서는 생각을 키우는 최고의 보약이다. 읽지 않으면 생각이 좁고 알아진다. 뭔가를 안다는 건, 생각의 힘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길을 연다는 뜻이다. 한테 생각은 절로 자라지 않는다.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사유하는 만큼 그 경계가 확장된다. 상상 역시 공짜가 아니다. 아는 만큼 그 지경(地境)이 넓어진다. 지식과 사유는 풍성한 삶의 여문 씨앗이다. 누구나 나뉘는 사정이 있듯 책도 각각 스토리가 다르다. 시는 메마른 정서를 깨어나게 하고, 소설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역사책은 과거를 현재로 끌어와 미래를 비춰주고, 전문서적은 지식을 켜켜이 높여준다. 근육이 단단한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도 소위 ‘핏’이 난다. 책을 읽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생각의 핏’이 다르다.

책값은 아끼지 말자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 중 하나는 ‘큰 생각’을 얻는 것이다.

돈이 조금 생기면 책을 산다. 그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음식과 옷을 산다.

-에라스무스

자신의 책이 없다는 것은 가난의 심연과 같다. 거기에서 탈출하라.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은 사들 만하다. -존 러스킨

66

책은 '거인의 어깨'다.
그 위에 올라서면 보지 못한 세상, 더 넓은 세상,
다른 세상이 보인다. 스스로가 거인이 아니라면
그의 어깨에 올라가 지금까지 못 본 세상,
닿지 못한 생각, 새로운 지식을 마주하자.

99

넓은 코트를 입을지언정 새 책을 사는 데 게으르지 마라. -오스틴 펠프스
책을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까지 살 수 있다면
말이다. -쇼펜하우어

세상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하나같이 “책을 사서 읽으라.” 한다. 이구동성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특히 고전은 가슴에 새길 대목이 많다. 문장이 수려하고, 함의도 깊다. 밑줄 그어가며 읽고, 나중에 그곳만 훑어봐도 양식이 된다. 세월을 좀 익혀 읽으면 또 다른 맛이 난다. 『어린왕자』는 나이 들어 다시 읽어야 제대로 제맛이 우러난다. 막스 베버는 “두 번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한 번 읽을 가치도 없다.”라고 했다. 마케팅 문구가 시선을 잡는 ‘신간’도 좋지만, 세월이 보증한 ‘고전’은 읽을수록 향이 난다.

커피 서너 잔 값이면 책 한 권을 산다. 한데 양서는 그 돈을 열 배, 백 배, 천 배로 불러준다. 이만하면 엄청나게 남는 장사가 아닌가. 지혜로운 사람은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고, 어리석은 사람은 재미에만 돈을 쓴다. 커피 한 잔 아끼는 건조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의미와 가치를 팽개치지 말라는 얘기다.

책은 '거인의 어깨'다. 그 위에 올라서면 보지 못한 세상, 더 넓은 세상, 다른 세상이 보인다. 스스로가 거인이 아니라면 그의 어깨에 올라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세상, 닿지 못한 생각, 새로운 지식을 마주하자. 앎을 두텁게 하고, 뇌를 창의적으로 바꾸고, 상상을 부풀려 막힌 생각을 뚫어보자. 지식은 언제 어디서나 유효하다. 상식 역시 늘 유용하다. 앎은 주제적 삶의 토대다. 스스로 판단하고, 멀리 내다보고, 깊이 들여다보는 힘이다. 사색의 근력과 추론의 내공을 키우는 씨앗이다. 그 모든 것을 책이 품고 있다.





지금, 한 권을 집어 들자

위대한 업적은 모두 책에서 나왔다. 조선시대 전후기 르네상스를 꽃피운 세종과 정조,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간디, 넬슨 만델라, 체 게바라, 칸트, 니체, 스티브 잡스의 큰 족적도 책을 벗했기에 가능했다. 볼테르는 “과거의 이 세상 모든 것은 몇 권의 책으로 지배되어 왔다.”라고 했고, 에디슨은 “책은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게 남겨준 유산”이라고 했다. 책은 지금보다 훨씬 근사한 길로 당신을 인도하는 으뜸 멘토다.

첫 만남은 누구나 어색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통하면 둘도 없는 벗이 된다. 책을 벗하는 순간, 삶이 달라진다. 풍성하고, 우아하고, 격조 있고, 아 우라 있게. ‘내일부터 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다음 날도 같은 말을 반복한다. 시간이 없다고 둘러대지 말고, 작은 책 한 권을 지금 바로 손에 쥐어보자. “책 읽기에 좋은 곳으로 세 가지 장소가 있다. 침상, 말안장, 그리고 화장실이다. 읽고자 하는 뜻이 진실하다면 그 장소야 무슨 문제가겠는가.” 중국 송나라 학자 구양수의 말이다.

『리스본행 야간열차』의 작가 파스칼 메르시어는 “우리는 자기 결정을 위한 운명의 순간을 종종 되돌아보고서야 깨닫는다.”라고 했다. 나이 든 원숭이도 새로운 재주를 배울 수는 있다. 한데 힘이 두 어 배로 든다. 세상은 ‘지금’을 잡는 자가 앞서간다. 내일부터 읽는 자보다 지금 읽는 자가 세상을 리드한다.

책으로 생각을 키우려면 ‘주체적 독서’가 중요하다. 쇼펜하우어의 비유를 빌리면 책은 사유의 탄력성을 키워주는 용수철이 되어야 한다. 책에 얼굴을 파묻고 저자의 생각만 흡입하면 용수철이 탄성을 잃고 되레 구부러진 철사로 변질된다. 생각이 맞으면 고개를 끄덕여 주되, 생각이 다르면 자신의 생각도 그 안에 섞어가며 읽어야 나를 잃지 않으면서 내가 커진다. 책장 사이에 자신의 생각을 끼워 넣으면 한 권의 의미가 그만큼 더 깊어진다. 팔의 알통은 아령으로 단단해지고, 사유의 알통은 책으로 단단해진다. 바쁘다는 핑계로, 게으름에 젖서 밀쳐두었다면 손을 뻗어 책 한 권을 집어보자. 사고의 근력을 키워 삶을 빛나고, 우아하고, 풍성하게 만들자.

100세 시대의 재테크

개인 브랜드화 전략

100세 시대, 반퇴 시대, 인생 삼모작 등으로 상당히 긴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요즘, 효과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재테크가 필요하다. 노후에 입은 재테크 손실은 회복도 어렵고 정신적, 경제적 타격도 크다. 비교적 손실의 위험 없이 해볼 수 있는 재테크는 있을까?

희망은 아직 내 손안에

보통 고위험군 재테크 상품일수록 더 높은 이율로 투자자를 유혹한다. 투자자는 손실의 위험은 크지만, 이를 무시해 넘기면 더 큰 이익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말에 갈등하게 마련이다. 소위 ‘대박’의 기회를 만들 것인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인가.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안정적이면서도 확실한 재테크가 답이다.

장기적인 안목의 재테크로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 브랜드화’, 나만의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여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즉 나 스스로가 1인 기업이 되어 그 분야에서 가치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재테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는 다름 아닌 나 자신에게 있다. 잘하는 게 없어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 등 적당한 핑계가 많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은 말했다.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자신 안에 숨겨진 원석을 갈고

닦아 세상에 하나뿐인 보석으로 가공하자.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최고의 한 사람,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나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 다음의 개인 브랜드 인지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해 보자.

[개인 브랜드 인지도 체크리스트]

개인 브랜드 인지도는 총 7단계 질문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각 항목은 모두 5점 만점으로 아주 그렇다(5점), 조금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아니다(2점), 절대 아니다(1점)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점수를 체크하면 된다. 마지막에 있는 표(총합)에 각각의 점수를 넣어 합산하면 그것이 자신의 개인 브랜드 인지도 점수가 된다.

※ 출처: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있다』(조연심 저/HCbook 출판)

체크리스트			점수					
영역	No	질문	5	4	3	2	1	합계
A 브랜드 아이덴티티	1	지금 하는 일에 가슴 뛰는가?						
	2	10년 뒤에도 할 수 있는 일인가?						
	3	지금의 일은 돈과 명예가 따르는 일인가?						
B 오프라인 툴	4	당신은 최고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5	명함에 회사나 직함 외에 브랜드를 알리는 사명이 담겨 있는가?						
	6	당신이 하는 일이 미래에도 필요한 기술인가?						
C 온라인 툴	7	블로그가 당신의 브랜드를 말해주고 있는가?						
	8	블로그 포스팅을 매일 하고 있는가?						
	9	SNS를 활용하고 있는가?						
D 책발간	10	내 이름으로 낸 책이 있는가?						
	11	그 책은 나의 브랜드를 말해주고 있는가?						
	12	향후 1년 내 책 발간 준비를 하고 있는가?						
E 브랜드 포지셔닝	13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이나 브랜드명이 검색되는가?						
	14	인물 검색, 블로그, 카페, 이미지, 뉴스 등 모든 카테고리에서 검색되는가?						
	15	검색이나 소개를 통해 모르는 사람이 자주 새로운 일을 부탁하는가?						
F 네트워크 확장	16	SNS 친구와 자주 소통하는가?						
	17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대된 오프라인 모임까지 활발하게 참여하는가?						
	18	자신의 브랜드에 관련된 이벤트나 소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가?						
G 선순환 시스템	19	개인 브랜드 구축을 도와주는 멘토가 있는가?						
	20	자신을 도와주는 멘티가 있는가?						
종 합								

100~90점
당신은 이미 스타 브랜드

당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영역에서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이 높고 경제적 가치도 높은 상태다. 스타로서 자신의 위치를 충분히 즐기면서 자신을 따르는 멘티를 양성하여 브랜드 생명력을 연장하도록 한다. 또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것에 대비하여 미래 브랜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89~80점
경제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거나 곧 그렇게 될 브랜드

당신은 브랜드 인지도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한 상태이므로 더욱 높은 가치를 위해 다른 브랜드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브랜드 영향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으로 연결된 사람으로부터 일을 의뢰받기도 하는 단계다. 온라인상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검색될 정도로 브랜드 포지셔닝에 더욱 신경 쓴다면 지금보다 브랜드 파워가 높아질 수 있다.

79~70점
브랜드 가치는 있으나 경제적 가치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브랜드

온라인 또는 어느 한쪽에 영향력은 있으나 그에 상응할 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단계로 자신의 개인 브랜드와 관련된 일을 분주히 하고는 있으나 경제적 안정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전문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확실한 브랜드 영향력이 생기도록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자신의 전문성이나 상품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69점 이하
브랜드와 상관없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브랜드

개인 브랜드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거나 개인 브랜드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기도 한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후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당장 개인 브랜드 구축에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시대의 신뢰 형성법 마음의 문간에 들어서기

느리지만 확실하게, 스텝 바이 스텝

처음 만나는 상대, 아직 신뢰가 없는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일을 성사시키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각자의 입장이 있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이제는 대면하지 않고도 상호적 관계를 맺는 초연결시대이다. 비대면 시대에 상대의 마음의 빗장을 여는 방법은 무엇일까?

체격이나 외모, 눈빛, 성격, 성향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그 사람만의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리고 일명 기 센 인상, 푸근해 보이는 인상, 깐깐해 보이는 인상 등이 만들어진다.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 인상은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인상 관리는 중요한 과제였다. 좋은 인상이라면 상대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좀 더 빨리 신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좋은 인상의 효과는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워졌다. 눈과 귀로 느껴지는 인상보다 사소하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Foot in The Door Technique)’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상대에게 뭔가 큰 요구사항이 있을 때 먼저 사소한 부탁으로 상대방이 가볍게 부탁을 들어주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자들이 밝힌 ‘인간의 연속 근사(Successive Approximation) 성향’에 근거한다. 사람은 작은 부탁이나 약속을 들어주고 나면 더 큰 부탁들을 들어주어야 할 의무감을 가지게 된다. 즉 작은

요구를 받아들인 후 사람들은 자신의 일치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호의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느끼기 위해 상대의 이후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

마음이 열리면 쉬워지는 세상만사

두 명의 사회심리학자의 연구도 흥미롭다. 1966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조너선 프리드먼, 스코트 프레이저는 캘리포니아의 가정집에 방문해 안전운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Drive Carefully'라고 쓰인 크고 흥측한 광고판을 마당에 설치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 결과 전체의 22.2%만이 부탁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실험 3일 전에 현관에 'Be a Safe Drive'라고 쓰인 작은 스티커를 붙이게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었던 주부들의 경우 무려 52.8%가 큰 안내판에 대한 부탁도 들어주었다고 한다. 사유지인 자신의 마당에 크고 흥측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허락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이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작은 부탁을 들어준 사람들의 경우 이후의 부탁에 대해 허용률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것이 바로 '문간에 발 들여놓기'이다.

우리 일상에서는 어떨까? 우리가 쇼핑할 때를 생각해보자. 간단히 셔츠 하나를 구매할 생각으로 들어갔던 상점에서 셔츠에 어울리는 바지, 바지에 어울리는 벨트 등을 구매한 경험은 없는가. 매장 직원의 안내로 셔츠를 고른 후 이어지는 추가적 요구에 쉽게 결정을 내리게 된 적은 없는가 말이다. 문간에 처음 발 들여놓기가 어렵지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조금씩 단계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열어가는 쉬워진다. 이는 남녀의 만남에도 성립되는 기법이니 싱글 미혼남녀라면 주목해볼 만하다.

마음의 빗장을 여는 열쇠, 역지사지

어감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도 있다. '문간에 머리 들이밀기 기법(Door in The Face Technique)'이 그것이다. 처음에 무리한 요구를 한 다음 슬쩍 양보하는 듯이 작은 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그 요구를 들어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찬 투정을 하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어머니가 처음에는 아이가 가장 싫어하는 반찬으로 밥을 주려다가 거부감이 낮은 다른 반찬으로 밥 먹이기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어머니는 바로 '문간에 머리 들여놓기' 효과를 제대로 본 것이다.

상대의 마음의 문간에 머리를 먼저 들여놓건, 발을 먼저 들여놓건 중요한 것은 우선 상대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상대의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대를 정확히 간파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지사지가 기본자세이다. 역지사지는 상대의 뜻에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상대의 마음의 빗장을 여는 열쇠는 이미 내 손에 쥐어진 셈이다.

먼저 먹으면 살이 되는 음식, 독이 되는 음식

식재료도 궁합이 있고, 요리도 체질에 맞게 먹어야 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지만, 식사를 하는 순서도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모르는 이들이 많다. 먹는 순서만 잘 지켜도 고질적 성인병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실천하며,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실천해보자.

식사의 시작은 채소부터

본인의 식사 습관을 먼저 떠올려보자. 한식의 기본구성인 밥, 국, 김치 그리고 각종 반찬이 있다면 보통 어느 것부터 시작하는가. 밥 한술 뜨고 반찬을 집는 사람, 시원하게 국물로 시작하는 사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고기반찬 먼저 맛보고 시작하는 사람 등 다양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으로 식사를 시작한 사람을 가리자면 채소 반찬을 가장 먼저 집어 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밥이나 면처럼 몸속 혈당치를 갑자기 높이는 탄수화물보다 채소의 식이섬유를 장에 먼저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채소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하여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빠른 포만감을 유발한다. 혈당이 높아지면 에너지 소모를 떨어뜨리고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바꾸어 살이 찌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음식이 위에서 장까지 옮겨가는 데는 최소 5분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천천히 꼭꼭 씹어서 식사 시작 후 5분 이상 채소를 먹는 것이 좋다. 우리 몸에는 약 1만 3,000종류의 유기화합물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소화와 대사를 돕는다. 채소에는 바로 이런 유기화합물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당근,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피망 등 녹색채 채소를 포함해 양상추, 양배추, 배추, 양파 등의 담색 채소도 좋다. 버섯, 해조류 등도 저열량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하니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금상첨화다. 단, 유기화합물은 열에 약해 48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파괴되므로 샐러드나 무침 등으로 요리해 먹도록 한다. 밥만 탄수화물이 많은 것이 아니다. 감자, 고구마, 토란, 마, 연근, 단호박, 옥수수, 강낭콩, 팥 등도 탄수화물 함량이 많으니 밥과 마찬가지로 식사 맨 마지막 순서로 미뤄둔다.

채소 섭취 후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채소 위주로 시작했다면 단백질이 풍부히 들어있는 반찬을 먹도록 하자. 고기는 지방이 많아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피부·모발 등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주원료인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육류와 함께 어패류, 콩제품, 유

제품에도 풍부하다.

고기를 먹을 때 곁들이는 밥, 냉면, 소스 등이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식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

반찬을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는 것은 한식 특성에 맞지 않는 순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찬의 간을 덜 세게 하고 밥의 양을 줄인다면 가능하다. 미국 코넬대학교에서도 한 실험을 통해 ‘거꾸로 식사법’을 발표해 주목받은 바 있다. 거꾸로 식사법은 후식 후 밥·반찬 순으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 역시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하고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나중에 섭취하는 것이었다. 코넬대학교 브라이언 완싱크 교수의 연구팀은 남녀 124명을 대상으로 과일을 먼저 먹는 그룹과 계란과 베이컨 등을 먼저 먹는 그룹을 나눠 식사하게 했는데 실험 결과 앞의 그룹이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고 튀긴 음식 등 지방 섭취에 대한 욕구도 적었다고 한다. 또한 채식, 단백질과

탄수화물 순으로 식사 순서를 바꿔 두 달을 지속한 결과 9.1kg의 체중을 감량했다는 일본인 사례(『식사순서혁명』 가지야마 시즈오, 이마이 사에코 저)도 있으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도해보자. 그 외에 물은 식사 30분 전에, 과일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 것이 좋다.



NTS NEWS ROOM

2020. 09.

본청



국세청, 제24대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국세청은 8월 21일(금) 대강당에서 '제24대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김대지 청장은 취임사에서 국세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 2대 추진전략과 국세행정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두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어주며 마르지 않는다'는 이택상주(麗澤相注)의 자세로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고, 납세자와는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감으로써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서울청



서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현장 방문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7월 15일(수)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현장을 살피고, 신고창구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다. 김 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내방한 납세자들로부터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납세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한편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고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안내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하였다.



성북세무서, 그린 커튼 설치

성북세무서에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6월 6일(토) 시공한 냉쿨 식물이 다 자라서 그린 커튼의 모습을 갖췄다. 그린 커튼은 태양광 차단에 의한 실내온도 상승 억제, 냉방기기 사용 감소에 따른 에너지 절약, 도로변 소음 및 미세먼지 차단, 녹시율 증대 등의 효과가 있다. 성북

세무서는 성북구청의 협조로 정문 2층 창가에 그린 커튼을 설치함으로써 유리 마감 건축물에 소요되는 에너지 수요를 줄여 정부의 저탄소 정책에 일조하는 등 환경 사업을 진행하였다.



서대문세무서, '모범서대문인상' 수여

서대문세무서(서장 최희선)는 7월 21일(화) 2020년 2분기 '모범서대문인상'을 수여하였다. 서대문세무서는 매분기마다 다른 주제로 직원들에게 상을 주고 있다. 2020년 2분기에는 친절 관련 미담이 있는 직원들의 사례를 추천받아 관리자들의 심사를 통해 총 5명의 친절공무원을 선정하였다. '모범서대문인'에게는 표창과 부상으로 치장 세트를 지급하였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일하며 세무서를 빛내는 직원들을 위해 3분기에는 적극 행정을 주제로, 4분기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대문세무서의 '미소 왕'을 뽑아 '모범서대문인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반포세무서, 현장소통 최우수 세무서로 선정

반포세무서(서장 최원봉)는 현장소통 활성화 우수기관 심사에서 2019년 하반기에 이어 2020년 상반기에도 전국 1위의 최우수 세무서로 선정

되었다. 이번 심사에서 반포세무서는 직원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5층 유휴 공간을 1인 힐링과 소통을 위한 나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코로나 19로 재택·유연 근무를 하면서 늘어난 가용 시간에 최신판례·예규·논문 등을 콘텐츠로 제작하여 공유하는 등 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성과를 이끈 윤순상 전 서장(현 서울청 조사1국3과장)은 “재임 기간 2회 연속 최우수 세무서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소통과 공감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반포세무서가 소통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부청



중부청, '다목적구장' 현판 제막식 개최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준오)은 7월 16일(목)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소통·화합을 위해 조성한 다목적구장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였다. 다목적구장은 총 265명 규모로 풋살장 1면, 족구장 2면, 테니스장 1면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2월 착공하여 5개월여의 공사로 완성하였다. 이준오 청장은 “교육원 부지 매각으로 야외 체육시설이 사라져 아쉬웠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담은 다목적구장이 생겨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직원들이 구장을 잘 활용하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 생활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동안양세무서, 무더운 여름 수박 드세요!

동안양세무서(서장 김학관)는 7월 16일(목) 무더위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비롯한 각종 업무로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 수박을 제공하였다. 수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안양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구매하였으며, 김학관 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 도와가며 잘 이겨내자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경기광주세무서, 세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경기광주세무서(서장 황문호)는 7월 22일(수) 관내의 한 식당에서 세정협의회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황문호 서장을 비롯하여 각 과장과 세정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세정 홍보와 함께 세정협의회 회원들의 소식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축청사 추진 현황 등 세무서 소식을 전하였으며, 6.17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7.10 후속 대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양세무서, 연성대학교와 상호교류 협약 체결

안양세무서(서장 최지은)는 7월 22일(수)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연성대학교(총장 권민희)와 세무 실무교육 지원 등에 관한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준수하고 최소인원이 참석하여 간소하게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안양세무서는 연성대학교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신고 도우미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신고 기간 중 세무서를 방문한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 민원인이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성남세무서, '내 이름을 맞춰봐' 소통 행사

성남세무서(서장 이효성)는 7월 30일(목) ‘내 이름을 맞춰봐’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느라 하반기가 되어도 타과 직원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미처 알지 못한 여러 직원들이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마련된 시간이었다. 이효성 서장은 “이름과 얼굴을 아는 것부터가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며,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직원들끼리 앞으로 더 소통할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라며 소감을 말하고, 신규 수습직원, 고득점 부서 소개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NTS NEWS ROOM

2020. 09.

인천청



인천청장, 인천상공회의소 방문하여 경제 현안 공유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은 7월 15일(수)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강신)를 방문하여 지역경제 현안을 공유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구 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국세 업무에 유관기관으로서 협력을 부탁하였다. 인천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현안 간담회, 세정현장 방문 등 다양한 소통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청장, 신고현장 방문하여 직원 격려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은 7월 22일(수) 포천세무서와 동두천 지서를 시작으로 7월 23일(목) 서인천세무서, 7월 24일(금) 동고양세무서를 차례로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운영 상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실태를 살펴보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구 청장은 “홈택스와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신고 방법과 올해 신설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구 청장은 관내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행보를 계속해나가고 있다.



광명세무서장, 상반기 마무리 직원 격려 행사

구제승 광명세무서장은 7월 9일(목)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상반기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한 직원들과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 서장은 코로나19와 신고업무 등으로 지친 직원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하반기에도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직원들은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의정부세무서, 단체 헌혈 실시

의정부세무서(서장 최재호)는 7월 9일(목) 서울동부혈액원의 헌혈 차량을 지원받아 코로나19로 어려운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고자 단체 헌혈을 실시하였다. 이날 최재호 서장과 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하였으며, 헌혈이 끝난 후 혈액원 담당자와 헌혈 참여자들이 간단한 티타임을 갖고 사랑의 생명 나눔 행사인 헌혈을 하반기에도 다시 한 번 실시할 것을 약속하였다.



포천세무서, 전 직원에게 감사의 편지와 간식 선물

포천세무서(서장 최진복)는 7월 28일(화) 상반기 업무를 잘 마무리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으로 전 직원에게 감사의 편지와 함께 간식을 선물하였다. 최진복 서장은 편지에서 “지난 상반기 코로나19 상황에서 따뜻한 마음을 모아 마련한 특별 성금을 기탁하고 청렴 화분을 가꾸며 화훼봉기를 돕는 아름다운 동행을 같이 하였다.”라며 “직원 여러분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2020년 상반기 BSC 전국 1위, 체납현금징수 1위, 소통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이날 최 서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에 최선을 다한 부가소득세과 직원들과 간식을 같이 하며 격려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전청



대전청장,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방문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7월 23일(목) 세종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한 청장은 직원들에게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잘 안내하고, 방문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도와줄 것"을 당부하였다.



북대전세무서, 제헌절 나라 사랑 이벤트 추진

북대전세무서(서장 홍철수)는 7월 17일(금) 제72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고자 작은 이벤트를 추진하였다.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해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자체 제작한 부채를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부채에는 나라 사랑 정신이 깃든 태극문양과 코로나19 응원 메시지를 함께 넣어 더욱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되었다.



예산세무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 동참

예산세무서(서장 김기수)는 7월 17일(금) 코로나19 극복과 종식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공익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스테이 스트롱은 기도하는 두 손에 비누 거품이 더해진 그림에 'Stay Strong(견뎌내자)'이라는 문구를 넣어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3월 외교부가 시작한 캠페인이다. 김기수 서장은 캠페인을 이어갈 주자로 예산운전면허시험장장, 예산국도관리사무소장, 종자관리소장을 지목하였다.



아산세무서, '도시락 데이'로 소통

아산세무서(서장 박우용)는 7월 23일(목) 3층 소회의실에서 '도시락 데이'를 가졌다. 이날 '도시락 데이'에서는 박우용 서장과 각 팀 별 직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박 서장은 코로나19로 줄어든 직원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7월부터 '도시락 데이'를 시작하였으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화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광주청



광주청장, 목포세무서 신고창구 방문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7월 21일(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많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일선 부가가치세 신고창구를 방문하였다. 이날 박 청장은 해운업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세무서를 방문하여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였다. 직원들에게는 납세자들이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내방 납세자가 불편함 없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 경기침체에 따른 소규모 영세납세자 및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도 당부하였다.



NTS NEWS ROOM

2020. 09.



광주청장, 민원봉사실에 '피자 배달 파티'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8월 4일(화) 재난지원금 신청에 따른 증명발급 증가, 마스크 착용 근무 등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대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원실 근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15개 관서 민원봉사실 근무 직원 144명에게 피자과 음료를 간식으로 보냈다. 무더위 속에서 근무하다 뜻밖의 간식을 받은 직원들은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등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전주세무서, '동영상 강의 콘테스트' 특별상 수상

전주세무서(서장 김용재)는 7월 6일(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한 '2020년 제1회 동영상 강의 콘테스트 시상식'에서 장려상과 최다 출품

관서로서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동영상 강의 콘테스트를 개최하였고 전주세무서는 총 17개 동영상 강의를 출품하였다. 전주세무서에서는 콘테스트 공모 이전부터 납세자 가이드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세무서 내에서 상영하였고 무인 민원 발급기와 무인 수납기의 동영상 가이드를 제작하여 디지털 포토(액자)에 담아 제공하는 등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전주세무서, 생일축하 이벤트

북전주세무서(서장 봉삼중)는 7월 29일(수), 7월 이 생일인 직원, 복직 직원과 지역인재 실무 수습생을 축하하는 이벤트를 하였다. 이날 직원들의 축하 공연을 배경으로 꽃다발을 전달하고 케이크를 잘랐다. 봉삼중 서장은 생일 축하 덕담과 함께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준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였다. 직원들도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다른 과 직원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누며 서로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네는 등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대구청



대구청, 모범납세자 초청 행사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최시현)은 7월 9일(목) 코로나19로 인해 제54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취소된 상황 속에서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모범납세자 초청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5명에게 꽃바구니와 함께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또한 모범납세자들이 평소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과 사회공헌 활동 등을 담은 동영상을 행사장에서 상영하여 납세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대구청, 대구수목원 숲 체험 힐링 행사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최시현)은 7월 16일(목)부터 7월 30일(목)까지 2주에 걸쳐 청사 인근의 대구수목원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직원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재충전하는 숲 체험 행사를 실시하였다. 숲 해설사와 동행하여 숲과 식물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목원을 관람하였으며, 직원들은 "평소 수습

번 무심히 지나간 길인데 숲 해설사의 친절하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바쁜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직원들과 함께 웃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대구청, 상반기 현장소통 활성화 최우수기관 선정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최시헌)이 2020년 상반기 현장소통 활성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7개 지방청 현장소통팀의 상반기 소통문화 활성화 사례를 대상으로 전 직원의 설문 조사를 통해 선정된 뜻깊은 결과였다. 대구청은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업무를 찾아 폐지·개선하기 위한 자체 TF '비우GO!' 운영으로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직원 불편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힘내요! 2020' 이벤트 등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비대면·온라인 소통 활동도 강화하였다. 한편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는 대구청 산하 포항세무서와 서대구세무서도 입상하여 기쁨이 배가되었다.



부산청



부산청, '흔한 선배 따라잡기 원 포인트 레슨' 시행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은 2020년 '새로운 부산청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흔한 선배 따라잡기 원 포인트 레슨' 정기 메일을 7월 30일(목)부터 부산청 소속 직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올바른 메일 사용법'과 본·지방청에서 주로 사용하는 '문서작성 노하우' 등을 콘텐츠로 제작하여 핵심 내용만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현안으로 바쁜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월 24일(목)까지 매주 목요일에 메일로 발송되는 원 포인트 레슨을 통하여 부산청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청, 온라인·무인민원발급기 국세증명 발급 홍보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은 부산·울산·제주시와 연계하여 온라인·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국세증명 발급 안내 이미지를 시내버스정류소 내 '버스정보 안내기'에 8월 3일(월)부터 송출하였다.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홈택스), 모바일(손택스)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 방법을 홍보

하고, 'QR코드'를 활용하여 생활근거지 인근의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쉽게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홍보를 통한 언택트(Untact) 국세증명 발급 활성화로 민원실 혼잡을 방지함으로써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방지도 기여하고 있다.



양산세무서, 직원을 위한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안내

양산세무서(서장 손해수)는 민원 응대 직원들을 배려하고자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안내문을 제작하여 민원봉사실과 신고안내 창구에 7월 22일(수)부터 부착하여 안내하고 있다.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업무가 본연의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노동자를 말하는 것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통하여 감정노동에 대한 납세자와 직원 모두의 인식 개선을 기대한다. 또한 경상남도 감정노동자관리보호센터와 연계하여 직원들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Feel the REAL
KOREAN
HERITAGE
www.nts.go.kr



국세청

유네스코 등재 한국의 서원
7.3(금) ~ 7.31(금)

2020



세계유산축전

한국의 세계유산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

www.worldheritage.or.kr

경상북도
경주역사지구,
하회·양동마을,
영주 부석사·소수서원

7.31(금) ~
8.3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9.4(금) ~ 9.20(일)

주최: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Jeju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한국문화재단
Korea Culture Foundation

(재)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세계유산문화재단
World Foundation for Cultural Heritage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축전 사무국

9월 세무 캘린더

※ 이달의 세무 캘린더로 활용하세요

9월 주요 세무 일정

9월 1일

- ★ 2019년 종합 · 양도소득에 따른 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기한후신고자)
➡ 2019년 귀속분

9월 10일

-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0년 8월분
- ★ 인지세 납부(후납)
➡ 2020년 8월 작성분
-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0년 8월분
- ★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0년 8월분

9월 15일

-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9. 1.~9. 15.)
➡ 2020년 상반기 소득분

9월 25일

-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0년 8월분

SUN

MON

6

7

백로

13

14

20

21

치매극복의 날

27

28



SEPTEMBER 2020. 9.

TUE	WED	THU	FRI	SAT
1 ★	2	3	4 지식재산의 날	5
8	9	10 ★★★★	11	12
15 ★	16	17	18	19
22 추분	23	24	25 ★	26
29	30			

서툴어도 괜찮아 !

앙리 루소

Henri Rousseau



The Football Players, 1908, Oil on Canvas

나뭇잎이 노랗게 물든 가을 공원에서 남자 네 명이 유니폼까지 맞춰 입고 열심히 풋볼(어쩌면 핸드볼)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리 열심히 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공을 잡아 올린 이는 공이 아닌 정면을 바라보며 다른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왼쪽 사람은 공을 잡기 위해 옷을 잡아당기는 듯하지만, 자세히 보면 권투 자세를 취하며 장난을 칩니다. 제일 오른쪽 남자 역시 볼을 잡은 남자를 따라 합니다. 맨 뒤의 남자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이들을 바라보며 웃고 있습니다.

「풋볼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그림의 작가, 앙리 루소는 프랑스 마옌의 라발에서 가난한 함석공의 아들로 태어나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독학으로 그림을 배운 앙리 루소의 작품들은 전문적인 기교보다는 소박하지만, 순수한 열정을 그림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환상과 전설, 그리고 단순화된 형태와 기하학적인 구성이 특징인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 앙리 루소를 환상적인 천재, 입체파의 선구자로 불리게 하지요.

그는 살아생전 빈곤 속에서 그림을 그렸고, 두 번의 결혼 모두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사기 사건에 휘말리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거나 은둔하지 않고 시인 아폴리네르를 비롯해서 R.들로네, P.피카소, 비평가 W.우데 등 많은 예술가와 교류하며 살았습니다. 성격이 좋았던 앙리 루소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 「풋볼하는 사람들」에 등장하는 인물 모두 앙리 루소 자신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우스꽝스럽지만, 웃음이 묻어나는 풋볼 플레이어들, 프로 같진 않지도, 유쾌하게 즐기는 모습에 그림을 보는 사람까지 웃음 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앙리 루소의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국세권말고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월간 <국세>를 더욱 알차게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국세>는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번 호에서 가장 관심 있었던 기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새로운 코너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편집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응모기간 2020년 9월 25일(금) | 보내실 곳 hanee2000@hanmail.net

1

국세 퀴즈

월간 <국세> 9월호를 읽고 아래 문제를 풀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국세청이 마련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9월호 '반갑습니다'에서 만난
세무관서는 어디일까요?

- ① 시흥세무서
- ② 기흥세무서
- ③ 수성세무서
- ④ 고양세무서

힌트 54페이지를 확인하세요.

2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낱말은
무엇일까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구매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 전용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 오픈됐다. 각종 생활 가구·가전·주방·식품 등을 세금포인트로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힌트 04페이지를 확인하세요.

3

다음 중 징수유예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④ 납세자 동료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힌트 16페이지를 확인하세요.



2020년 8월호 '국세 퀴즈' 정답

- 1. ②
- 2. 영세납세자 지원단
- 3. ④



2020년 8월호 당첨자(전화번호 끝자리)

김*중(6807)
이*경(6773)
조*석(6499)

2

편집위원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오규용 서기관
국세청 대변인실 송평근 행정사무관
국세청 운영지원과 박광식 서기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전진 행정사무관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권태윤 서기관
국세청 감사관실 육규한 행정사무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채규일 행정사무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김성수 행정사무관
국세청 징세법무국 이병탁 행정사무관
국세청 징세법무국 김도균 행정사무관
국세청 징세법무국 임경환 행정사무관
국세청 개인납세국 박현수 행정사무관
국세청 법인납세국 민강 행정사무관
국세청 자산과세국 조성래 서기관

국세청 조사국 박국진 서기관
국세청 소득지원국 천주석 행정사무관
서울청 조사국 양영진 행정사무관
국세청 세정홍보과 김민수 행정사무관
국세청 세정홍보과 최현선 국제조사관
국세청 세정홍보과 윤해민 국제조사관

일년에 두 번, 당신에게 띄우는 희망 메시지
'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세요~!

반기신청·지급제도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



신청자격



2020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급시기



요건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 12월 지급 예정
※ 심사과정에서 지급제외 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0.9.1.~9.15.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인터넷)
서면신청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상담·문의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



- 서울청 02-2114-2199
- 부산청 051-750-7199
- 대전청 042-615-2199
- 대구청 053-661-7199
- 중부청 031-888-4199
- 인천청 032-718-6199
- 광주청 062-236-7199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유난스러웠던 장마와 태풍에도 잘 버티어준 들판의 벼,
나뭇가지에 안간힘으로 매달렸을 각종 과실들이
황금빛 들녘과 붉은 열매로 가을을 선물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